

교육활동 침해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

—
교원용 자료집
—

CONTENTS

I.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3
2. 피해교원 치유와 회복 지원	9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단계별 대응요령	17
4.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이해	21
5.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 수단	25
[참고 1] 교육활동 침해 외의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결 방안	29

II.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

1. 수업시간에 욕하는 행위	35
2. SNS 등에서 교사에 대한 허위 정보나 비방성 글을 유포한 행위	41
3. 원격수업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49
4.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55
5. 교사 대상 성추행 행위	61
6. 학교 내 불법 촬영과 합성 및 유포 행위	67
7. 사전 약속 없이 일과시간 이후 전화와 문자를 하는 행위	73
8. 지속적으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79
9. 협박을 당하는 경우	85
10.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는 경우	91

III. 그 밖의 학교 내 문제 상황과 대응 방안

1.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자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99
2. 휴대폰 사용 및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	107
3. 절도사건 처리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113
[참고 2] 경찰에 신고당하거나 조사 받는 경우	121
[참고 3] 교사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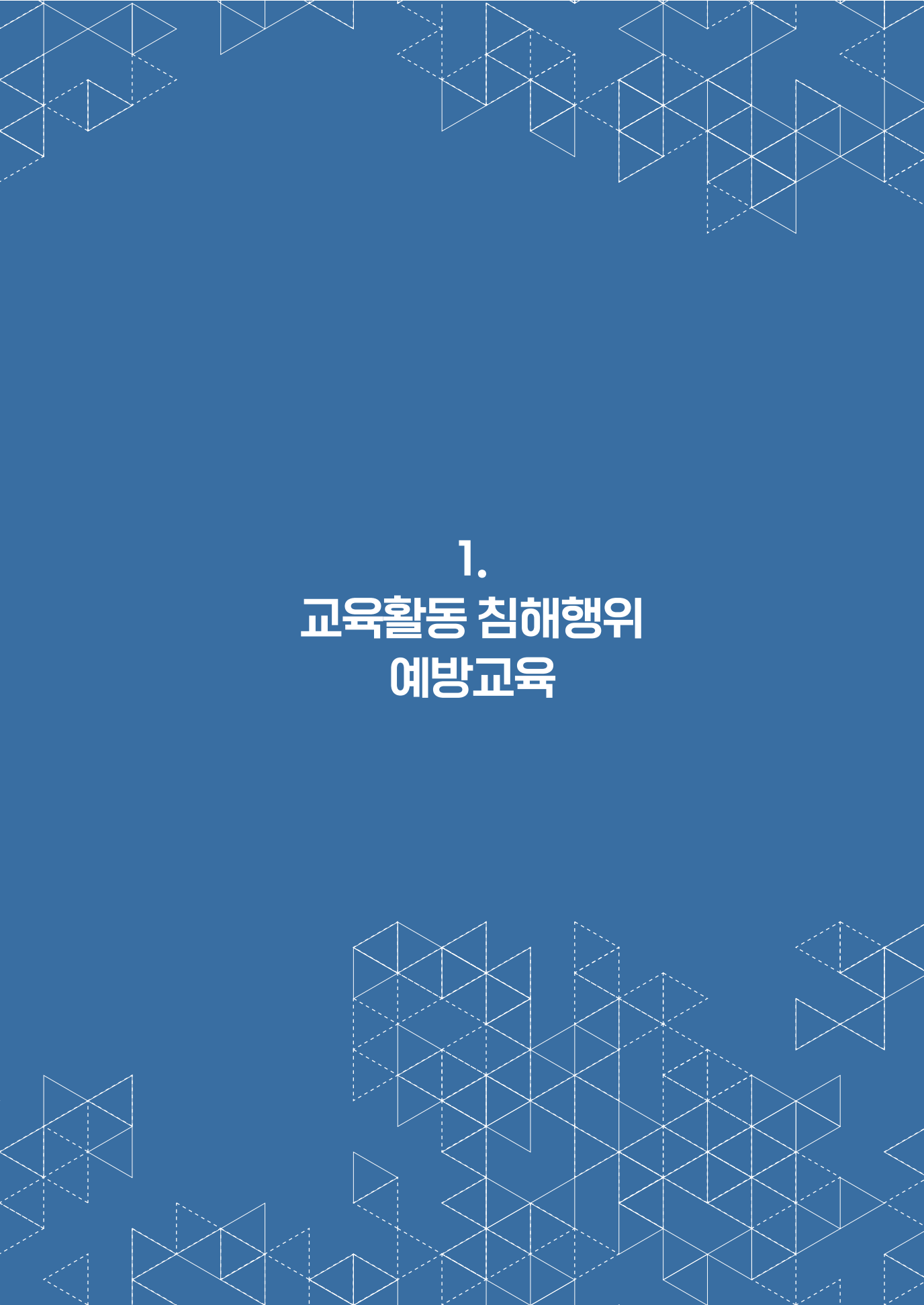


I.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

구분		내용	근거
예방	예방교육	교직원 · 학생 · 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제1항
대응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못한 분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분쟁) 분쟁조정 - 기타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외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
조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15조 제2항
		특별휴가	교원지위법 제14조의3 제1항 3호
		전보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3호
	학생조치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교원지위법 제18조
지원	교원치유 지원센터 운영	심리상담 및 치유 지원, 법률 상담 등	교원지위법 제17조
	법률지원단 구성	법률 상담	교원지위법 제14조의2 제1항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예방교육의 대상과 내용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 · 학생 ·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주요 내용

대상	내용
교직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의 보호자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자료

-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5편(초등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중학교 고학년~고등학교, 학부모, 교원)

자료명	QR코드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초등 저학년)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중학교 고학년~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학부모)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교원)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4권(초등, 중등, 학부모,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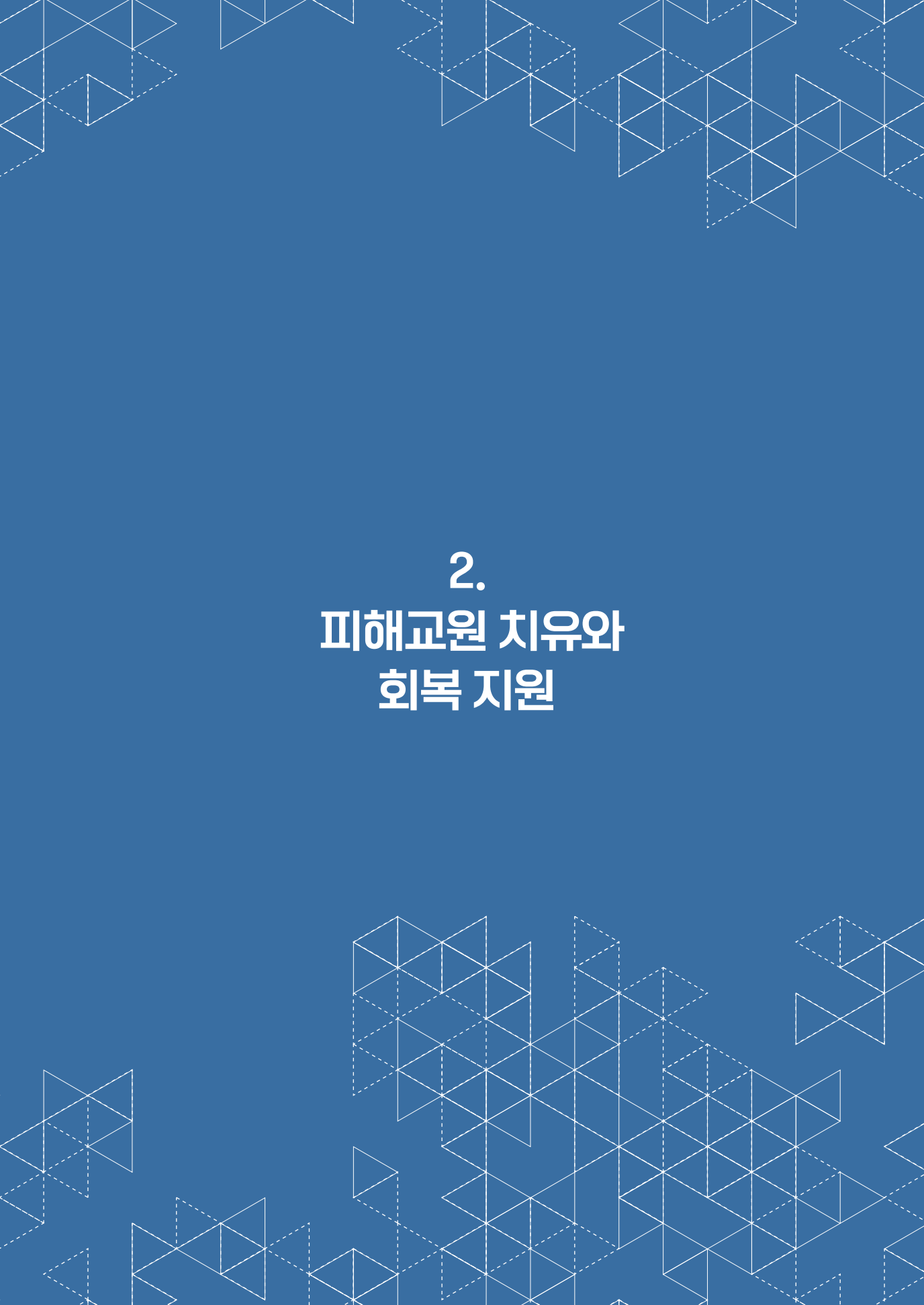
자료명	QR코드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초등)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중등)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학부모)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교원)	

- (교육활동 침해 예방)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 총 7차시로 구성

자료명	QR코드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참고사이트

-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누리집(www.forteacher.kedi.re.kr)
- 중앙교육연수원 누리집(www.neti.go.kr)



2. 피해교원 치유와 회복 지원

2. 피해교원 치유와 회복 지원

피해교원 보호조치

- 관련근거: 「교원지위법」 제15조 제2항
※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보호조치 유형
 - 심리상담 및 조언
 - 특별휴가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
- 목적: 피해교원의 치유와 회복 지원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 운영 현황: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심리 상담·치료 및 법률 자문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 중
- 주요 역할 및 운영 내용
 - 교육활동 침해 예방사업 운영
 - 업무 담당자 및 교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
 - 교원 심리상담 및 치유 지원: 힐링 연수, 심리검사, 개인·집단 상담 등
 -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 시·도별 교원치유지원센터 현황

(2022년 1월 기준)

구분	센터명	주소(센터명/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교원치유지원센터 대표 홈페이지	https://forteacher.kedi.re.kr/	1899-9876
서울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공감	종로구 송월길 48 학교보건진흥원 409호 http://www.sen.go.kr/	02-399-9093(상담사) 02-399-9400(변호사)
부산	교원힐링센터	(동부) 부산진구 중앙대로 945 교육연구정보원 4층 https://www.pen.go.kr	051-860-6277~8
		(서부) 서구 감천로 29 알로이시오힐링센터 3층 https://www.pen.go.kr	051-257-0256
대구	교육권보호센터	달서구 당산로 121 교육연수원 사도관 1층 http://www.dge.go.kr/forteacher	053-231-0540~3
인천	교원돌움터	남동구 문화로 169번길 73 인천해밀학교 창의관 3층 http://www.ice.go.kr	032-550-1783
광주	교원치유지원센터	(동부) 북구 서양로 111 http://forteacher.gen.go.kr/	1644-9575
		(서부) 서구 상무변영로 98 http://forteacher.gen.go.kr/	
대전	교원치유지원센터	서구 둔산로89 대전광역시교육청 3층 https://www.dje.go.kr/forteacher	042-616-8241(장학관) 042-616-8244(주무관) 042-616-8247(변호사) 042-616-8248(상담사)
울산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울산광역시교육청 4층 https://www.use.go.kr	052-210-5489
세종	교원치유지원센터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 306호 https://www.sje.go.kr/forteacher	1522-9575
경기	교원치유지원센터	수원시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https://more.goe.go.kr	031-249-0241~6

구분	센터명	주소(센터명/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강원	모두-힐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https://www.gwe.go.kr	033-259-0819
충북	교권보호지원센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북교육청 https://www.cbe.go.kr	043-290-2195~9
충남	교권보호센터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http://www.cne.go.kr	1588-9331
전북	교원치유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교육청 https://www.jbe.go.kr	063-239-3729, 3730
전남	교원치유지원센터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남교육청 4층 https://www.jne.go.kr	061-260-0008
경북	교원치유지원센터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북교육청 http://www.gbe.kr	054-805-3380
경남	행복교권드림센터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제2청사) 2층 https://www.gne.go.kr/forteacher	1811-7679
		(진주)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588번길 24 진양도서관 3층 https://www.gne.go.kr/forteacher	
제주	교원심방	제주시 문연로 5 제주도교육청(별관 4층) https://www.jje.go.kr/forteacher	064-710-0070

법률지원단 운영

-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4조의2 제1항
- 세부 내용 : 관할청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
- 기능 및 역할 :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 기능 및 역할 :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별휴가

-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4조의3,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
- 세부 내용
 -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것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명백하여 피해 교원의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부여 가능함.
 -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 내 부여 가능함.

Q.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하였는데 이후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의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를 병가나 연가로 정정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보

-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3호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중략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중략

※ 교원의 전보 조치 등은 각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

보호조치 필요 비용

-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함. 단,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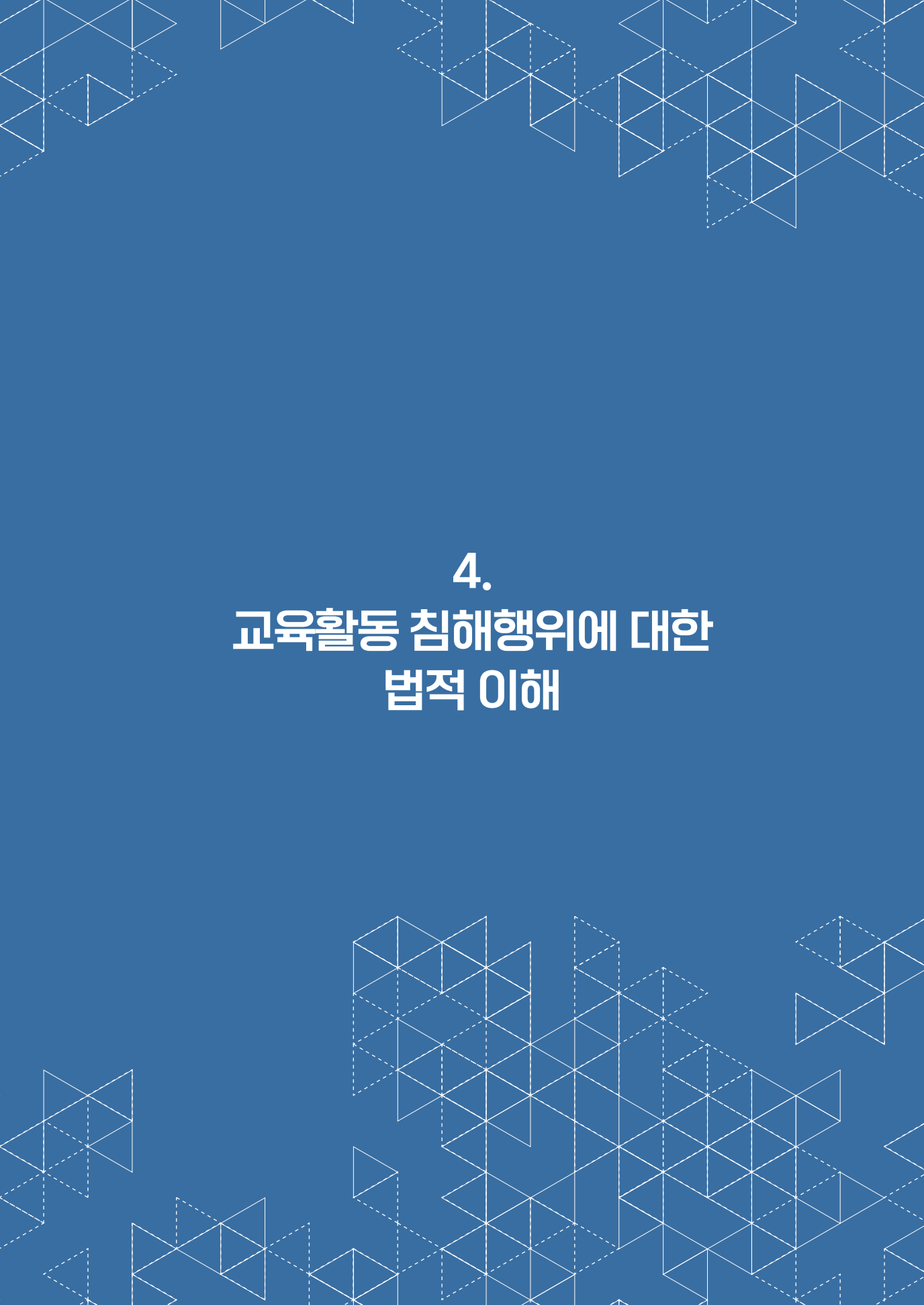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단계별 대응요령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단계별 대응요령

원칙	절차	업무담당자(교장, 교감, 업무담당 교원 등)대응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신속한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분리 >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 보호자에게 연락 •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 가해행위 중단 요청 • 주변에 도움 요청 • 현장에서 벗어나기 • 담당자에게 신고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보고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상담 지원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요양 신청 안내 등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사안발생보고 > 중대사안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에 보고	•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부상 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공정한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	사안 조사	• 피해교원 면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문답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작성 •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증거 수집 • 조사보고서 작성	• 당시 상황 기록·정리 • 진술서 등 증거 제출 • 관련자 조치, 필요한 보호조치 등 의사 전달 • 심리상담·법률상담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 안건 설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 분쟁조정 •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 •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 회의록 작성	• 사실관계 진술 • 서면진술 가능 • 관련자 조치, 추가로 필요한 보호조치 등 의사 전달
	사안 종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 불복절차 안내·지원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결과 보고	• 피해 회복 및 치유

※ 세부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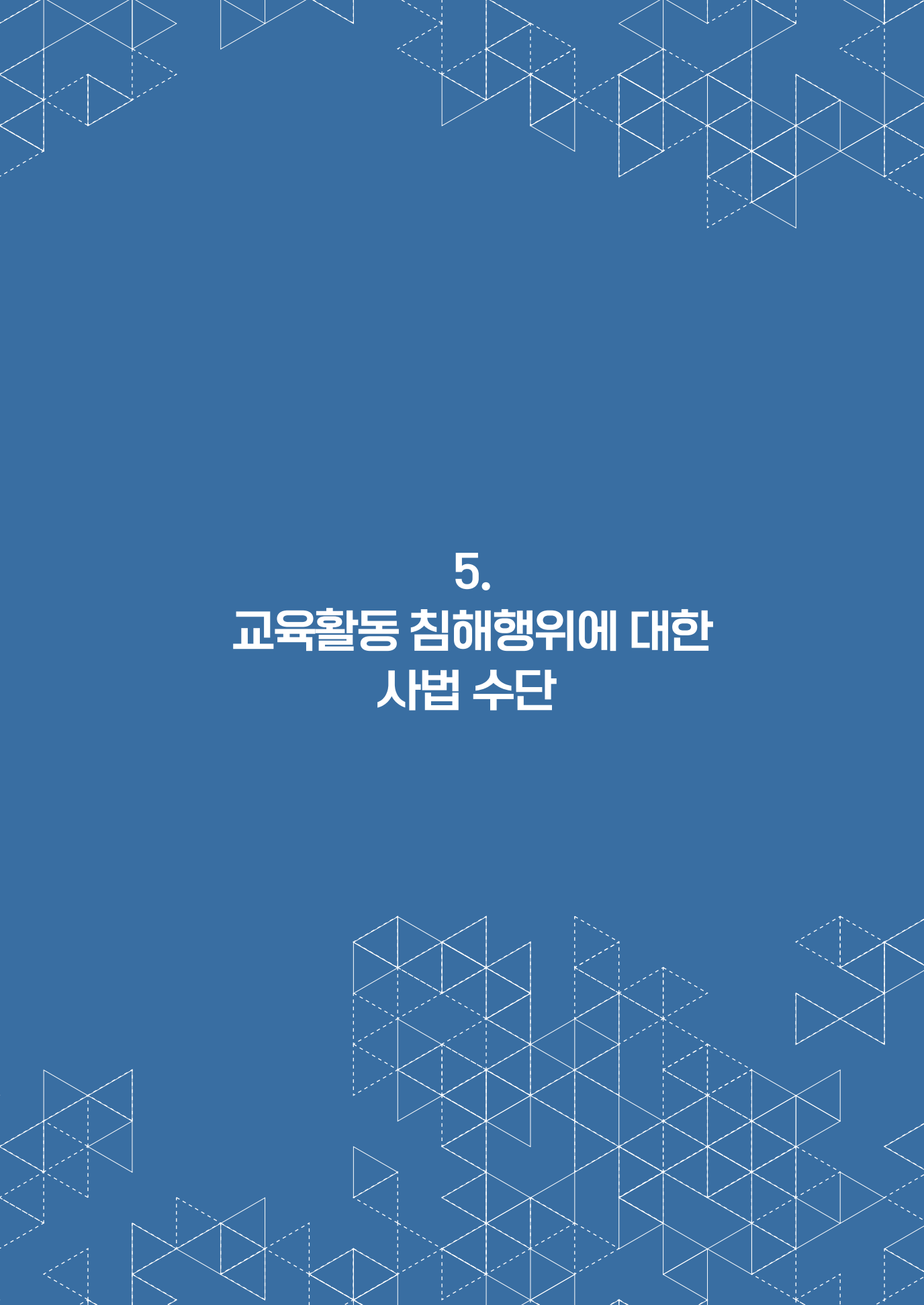
4.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이해

4.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이해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침해 유형	개념
상해와 폭행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하거나(폭행), 그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상해)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명예훼손과 모욕	명예훼손: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손괴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성폭력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유통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음 •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침해 유형	개념
공무방해 및 업무방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공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공무)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인 언동(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을 반복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등 무단 배포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여지가 있는 사안의 내용이 「교원지위법」과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도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 수단

5.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 수단

형사소송(형사 고소 및 고발)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이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여야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함.
- 관할청은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해당 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고소(고발) 시 유의사항
 -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처벌의사를 밝혀야 함.
 - 침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목격자 진술서, 녹취 등의 기록을 확보해두어 증거로 활용할 때 구제 확률이 높아짐.

민사소송

- 불법행위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교원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 시 유의사항
 - 소장(침해자(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함)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반드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불법행위와 교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구제 확률이 높아짐.

학교장 통고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도 해당됨. 이러한 경우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용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만10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학생에게 소년법상의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음.
- 활용 방법
 -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함.
 -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임.
- 장점
 -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라도(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특징
 - 학생의 비행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교육, 치료 및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함
 - 학생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비행 초기에 선도효과를 높일 수 있음.

[참고 1]
**교육활동 침해 외의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결 방안**

[참고] 교육활동 침해 외의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결 방안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닌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청구나 소청심사청구, 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함.

구분 \ 종류		고충심사 청구	소청심사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누가		국·공립교원	국·공립, 사립교원	국·공립, 사립교원
청구내용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 여러 고충에 대한 심사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권익 구제	인권침해, 차별행위
결정의 효력		권고	공·사립 모두 기속력 있음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불복할 경우	청구 인정	법적인 기속력은 없어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복절차(행정소송 등) 없음	공립은 불복 불가 사립은 소청심사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가능	-
	청구 기각		공립은 행정 소송 사립은 소청심사위 상대 행정소송과 법인 상대 민사 소송 가능	
기한		없음	30일 이내	없음
단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시·도교육청) ⇒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육부)	-	-
근거		교육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갑질 피해 신고

-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 갑질 피해 유형

유형	내용
법률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받는 유형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기타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 신고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또는 소속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신고
(※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교육부 감사관실(044-203-6848, 6074)에서 상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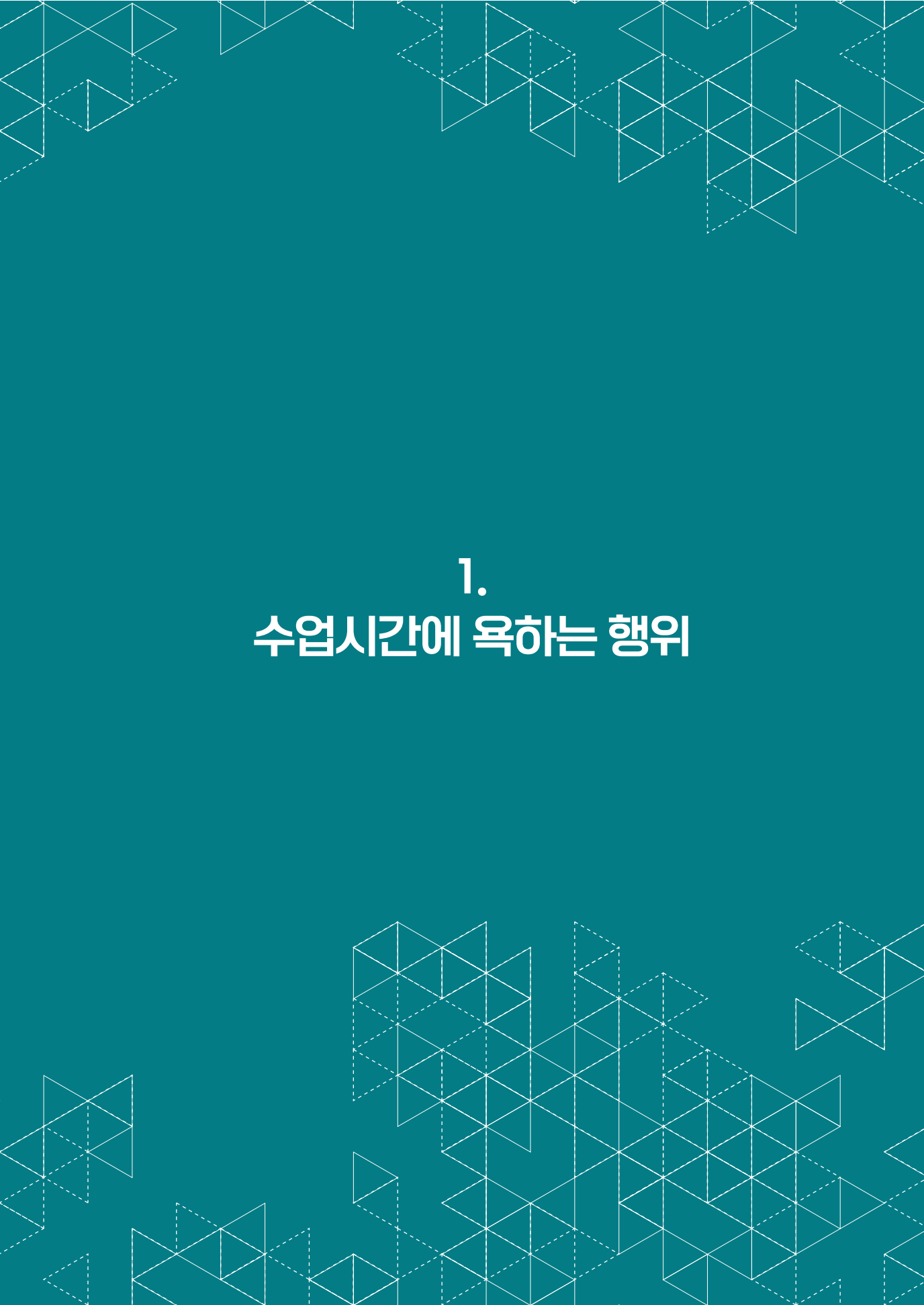


II.

—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

—



1. 수업시간에 욕하는 행위

1. 수업시간에 욕하는 행위

사례 수업 중 욕설

중학생인 A학생이 수업시간에 자고 있었어요. 잠을 깨워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며 자연스럽게 A학생에게 다가가 “수업시간이에요. 일어나세요!”라고 말했어요. 잠에서 깨어난 A학생은 짜증이 담긴 목소리로 “아~ **”이라고 욕을 했어요. 학급의 모든 구성원이 A학생이 한 욕을 들었고 순간 교실에 적막이 흘렀어요. 저는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의 A학생인지라 화를 내야 할지 용서를 하고 넘어가야 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반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담임교사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저속한 욕설, 무례한 언동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들. 위 사례와 같이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 앞에서 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욕을 한 경우,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한 욕이 아니라면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모욕)로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특별한 사정없이 교사의 정당한 수업 참여 지시를 거부하는 행동은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욕을 듣게 된 경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렵게 되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수업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위 사례와 같이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모욕)에 해당됨. 반면, 단순히 교사 앞에서 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욕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가를 살펴볼 수 있음.

수업시간에 욕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 방법

다른 학생들의 동요 차단하기

- 다른 학생들을 모두 자리에 바르게 앉도록 지도함.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기

- 수업을 함께 하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함.
- 해당 행위는 학교 규칙에 따라 선도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줌.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도 안내함.
- 무엇보다도 처벌을 떠나서 이런 행동은 학생 본인의 인격 및 타인의 학습권을 위해서도 옳바르지 않은 행동임을 설명함.

수업 후 해당 학생과 면담하기

- 잠시 말없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시원한 물 등을 권유하여 신체적으로 안정시킴.
- 먼저 욕을 한 이유, 화가 난 이유 등 학생의 입장을 먼저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함.
-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심한 욕을 하는 잘못된 행동은 학교 규칙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임을 설명함.
- 가능하면 해당 학생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교육함.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 학급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 다른 학생들이 이 일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지도함.

유의사항

지속적인 대응 방법

1) 학생들 스스로 수업태도를 성찰하고, 개선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Tip

학생자치회

- 핵심 교육당사자(학생, 보호자, 교사)의 권리와 권한을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 협약 체결 과정, 학생 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 권장(급별 수준 고려)
- 학교생활(수업, 교육행사 등)에서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 위반 시 조치 등 포함

학급자치회

- 학생자치회에서 정한 공동체 협약을 바탕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학급 규칙을 학급자치회에서 정하기
- 상호간의 약속을 실천하기
- 학급 규칙을 통한 서로의 책임 강화하기
- 학기 중에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학급자치회의 주제로 제안하기 토론 등 성찰 기회 제공
- 토론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수업시간의 개념에 대해 성찰 기회 제공하기
- 수업 방해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서로 나누면서 약속을 새롭게 만들거나 대안 만들기

2)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누가기록하기

- ▶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함과 동시에 학생의 수업방해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록함.

3)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도 방법을 논의하기

- ▶ 필요 시 학교 내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를 개최하여 학교 규칙에 따라 학생 지도 방법을 결정함.

4) 재발 방지를 위해 학급 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실시하기

- ▶ 학생,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함.
- ▶ 학생에게 자신의 요구나 필요가 있을 때는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지도함.

5) 적절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 ▶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함.
- ▶ Wee 클래스, Wee 센터 또는 학교 내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 해당 학생이 적절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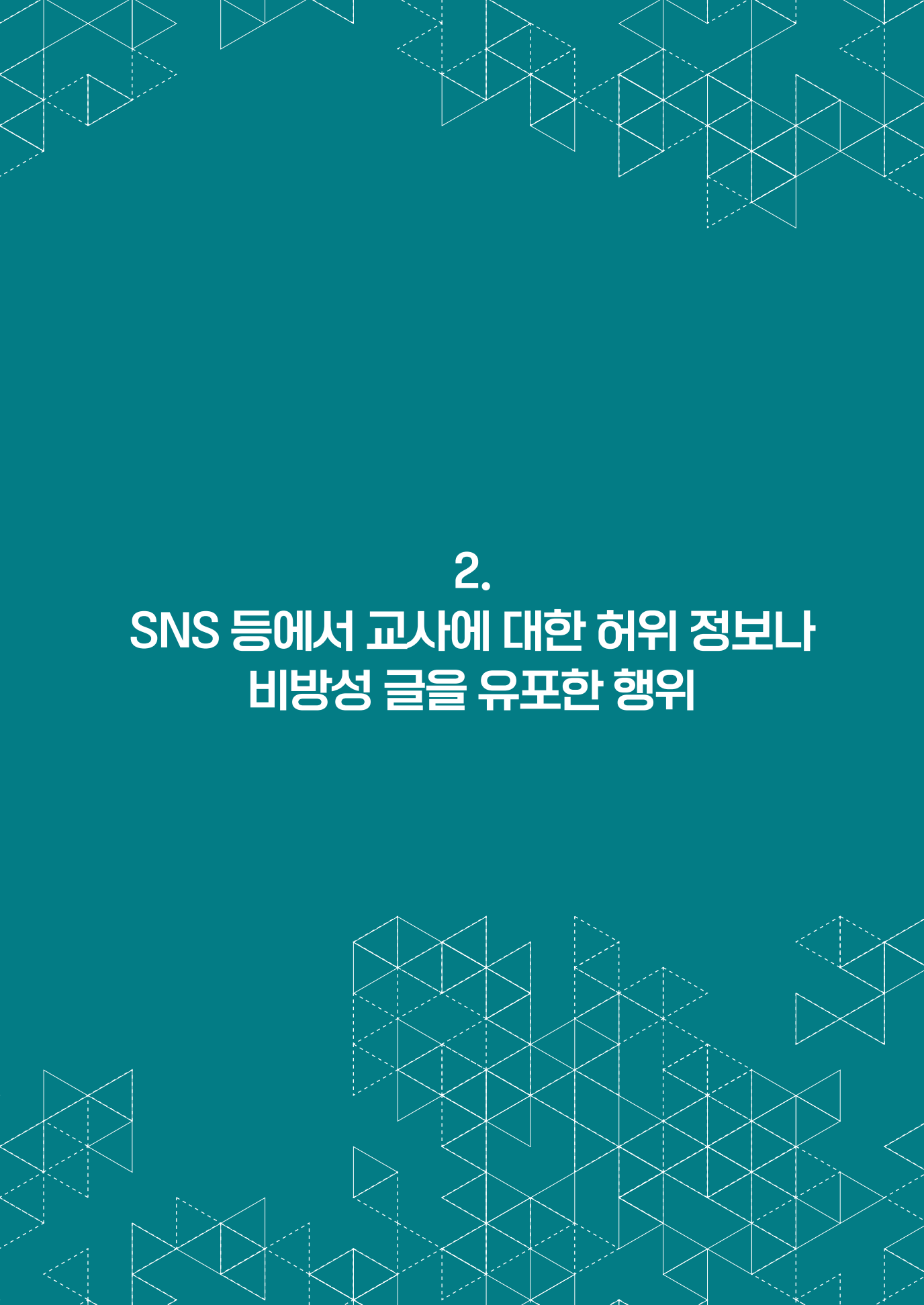
Tip¹⁾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인 학생은 화를 조절하기 어려워하며 자주 흥분하거나 충동적으로 분노를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감정을 가라앉혀 화를 제대로 표현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공감해주기
(www.youtube.com/watch?v=YJ-qj6AeDD4)
- 정서가 학습을 지배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CKqfl37wpjA>)
- 【ebs육아학교】 아이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859NOFBOT1A>)
- MBC 스페셜 다큐 548회 <10대의 감정보고서>
(<http://playvod.imbc.com/Template/VodView?bid=1000833100662100000>)

¹⁾ 담임교사를 위한 학생 상담 가이드(경기도교육청, 2018: 24~31)을 참고하여 작성함



2. SNS 등에서 교사에 대한 허위 정보나 비방성 글을 유포한 행위

2. SNS 등에서 교사에 대한 허위 정보나 비방성 글을 유포한 행위

사례 1 SNS에 교사에 대한 비방글 전송

담임교사는 A학생이 수업을 방해한다는 교과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점심시간에 교무실로 불러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불러가서 훈계를 들은 A학생은 인터넷 게시판에 “000교사는 낙하산이어서 실력이 없다.”라고 근거 없는 글을 전송하였습니다.

사례 2 인터넷 카페에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

인터넷 맘카페에 B학생의 학부모가 “00초등학교 0학년 0반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교원지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불법정보 유통 행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²⁾
- 위 사례와 같이 특정 교사³⁾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루머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루머를 재유포할 경우 비방할 목적으로 볼 수 있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게시한 내용의 글일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

²⁾ 전라남도교육청(2020),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p.110

³⁾ 온라인상에서 ‘특정성’이란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타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오프라인에서 특정성은 쉽게 성립하지만 온라인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SNS 등에서 교사에 대한 허위정보나 비방성 글 유포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 SNS 등 온라인에서는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확대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대응을 지체할수록 더욱 피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 필요함.
-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물 확보, 명예훼손 사실을 게재한 기관에 대한 삭제·정정 요청, 명예훼손자 대상 후속조치(형사고소 등) 실시의 단계로 대응할 수 있음.

게시된 글이나 사진에 대한 증거 확보

- 명예훼손 자료 출력, 스크랩 등을 통해 온라인에 게시된 자료가 삭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물을 확보함.
- 카페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최대한 보일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휴대폰의 전체화면 캡처 기능을 활용하여 저장함.
- 인터넷 자료, 휴대폰의 메신저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원본을 유지하여 저장함(사이트 주소 저장, 원본 캡처 등).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삭제·정정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홈페이지(<http://remedy.kocsc.or.kr/>)에서 신청하는 등 가급적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 요청이 어려울 경우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도 가능함.

Ti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피해구제 제도 소개

- 목적: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 댓글 등의 피해로 인한 이용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함
- 권리침해정보 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모욕 또는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인격권)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
- 명예훼손 분쟁조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의 청구
- 권리침해 상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신 사람을 위해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된 상담을 상시 접수하고 있음

※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증빙자료를 출력해서 함께 제출함. 온라인 신고도 가능함(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 심각한 사안의 경우 학교 내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 등) 또는 수사기관 신고 가능함.

가정과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

- 학생과 학부모가 거짓 정보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정보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 방법 등을 안내함. 또한 가정과 연계하여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가정통신문, 학부모 연수를 통해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안내함.
- 사회적으로 용인된 분노표출 방법이나 욕구 충족 방법, 문제 해결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함.
-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안내함.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충격과 이로 인한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의 학습에 주는 피해 가능성을 안내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가정에서의 협조를 요청함.

유의사항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시 유의사항

- 정보통신망은 전파의 속도가 빠르고 확산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아님. 왜냐하면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임 (대법원 판례 2012도10392 판결).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음.

단위 학교 사안 처리 유의사항

- 보호자 등이 침해행위자일 경우 학교장에게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침해행위자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청을 하도록 권고함.
- 침해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서면으로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진술 기회를 거부할 경우 사실 그대로를 경위서로 작성하고 피해교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처리함.
- 침해학생의 진술 오염이나 번복 방지를 위해 녹음해두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2인 이상의 교사가 함께 동석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함께 동석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것도 좋음.
- 학교에서는 임의로 적당히 해결하거나 피해교원에게 화해를 종용할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거나 회유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Q1.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단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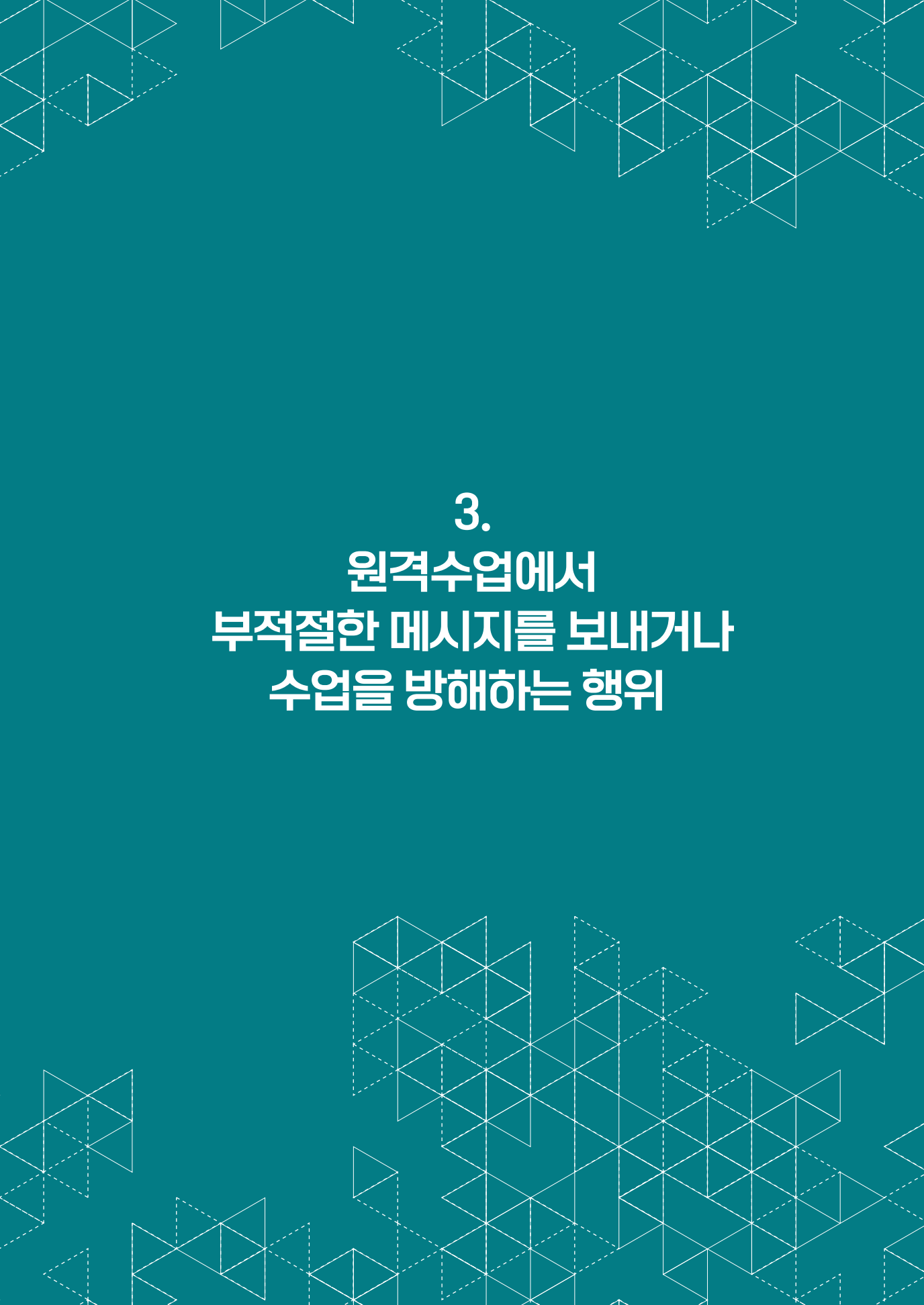
A1. 본문뿐만 아니라 댓글을 작성하는 형태라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형식에 상관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교사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피해교원이 누구인지 특정해서 알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성립되나요?

A2.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교원(들)이 누구인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피해교원(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08.6.26. 선고 2007헌마461)

Q3. 친구가 보내 준 교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희화화하여 합성한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e-메일, 단체채팅방 SNS,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한 것뿐인데 처벌을 받나요?

A3. 교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희화화하여 합성한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이므로 우연히 발견해도 교사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대응을 지체할수록 더욱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 원격수업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3. 원격수업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1 원격수업 중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교사는 수업 전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업을 다운받거나 캡처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공개된 뒤 A학생을 포함한 몇몇 학생에 의해 저장된 수업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유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더불어 수업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처하여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례 2 원격수업 중 욕설

실시간 쌍방향 학습으로 원격수업을 하는 도중 평소 품행이 좋지 않던 B학생은 채팅으로 욕설과 불필요한 내용을 도배해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였습니다. 교사는 B학생에게 그만두도록 지도하였으나 B학생은 지도를 받을수록 더 심하게 욕설을 하였고 심지어 전체음성으로 욕설을 하여 수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욕설의 내용은 교사의 외모에 대한 비하 및 수업의 질에 대한 이유 없는 평가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는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교사의 사진이나 수업영상을 담은 영상파일(영상파일의 캡처본)을 공유하면서 교사를 비하하거나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모욕 행위로 볼 수 있음. 모욕은 공연성과 특정성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예를 들어, 마이크를 통해 다른 학생도 들을 수 있는 상황(공연성)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욕설(특정성)을 하게 된다면 공연성과 특정성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됨.
- 사례 1과 같이 교사는 자신의 초상권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것을 학생에게 당부하였으나 수업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고 웃음거리로 만듦으로써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사례 2와 같이 원격수업 중 공공연히 마이크나 채팅을 이용하여 교사를 비방하고 교사에게 욕설을 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만약 교사에게 귓속말 기능 혹은 비밀쪽지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및 5호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원격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불법 캡처본의 유포행위, 부적절한 댓글에 대한 대응

- 평소 학생들에게 지적재산권과 초상권,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함.
- 사안 발생 시 교사는 인지한 순간 학생들의 휴대폰 등을 제출받아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다만 학생의 휴대폰을 검색하는 과정은 학생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강압적인 휴대폰 검사를 해서는 안 됨. 만약 아동청소년의 휴대폰 내용을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면 해당 학생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허가 혹은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음.⁵⁾
- 교사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담은 부적절한 댓글에 대해서는 삭제하기 전에 캡처, 저장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저장한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비활성화, 삭제 조치하여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함.

수업 중 욕설에 대한 대응

- 쌍방향 원격수업은 방송국 실황중계와 다르게 지연방송 등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학생의 돌발적인 욕설이나 돌출행동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움. 쌍방향 원격수업 시 학생들에게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 학생들의 돌출행동을 줄일 수 있음.
- 학생의 욕설을 들었을 때 욕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맞대응 하지 않도록 주의함. 모든 학생이 보고 듣는 장소에서 교사가 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싸우게 된다면 교사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음.
- 해당 학생의 욕설로 인해 수업이 방해받게 되는 경우 채팅이나 마이크 사용을 중지하고 수업을 진행함. 그러나 해당 학생을 강제로 원격수업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⁵⁾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에 의거 친권을 가진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의 휴대폰 정보에 대한 권한을 가짐.

유의사항

원격수업 진행 시 유의사항

- 쌍방향 원격수업에서 녹화기능을 켜 채로 수업을 진행할 때, 미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녹화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받도록 권장함.
- 일방향 원격수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캡처, 저장하여 기록하고, 해당 게시판 전체를 비활성화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함.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

- 학생들이 휴대폰 등으로 원격수업 중 얻은 불법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학생 스스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교사가 강제로 보거나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며, 교사와 학생 모두의 교육활동이 침해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정보의 공유내용을 신고한 학생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한 학생의 정보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관련 업무 담당자의 신속 대응 필요

- 학생들의 진술서, 캡처본, 녹화본 등을 보관하여 정리함.
- 이때 주변 학생들이 신고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후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하도록 조치함. 그리고 휴대폰과 같은 개인정보 기기는 학생들의 자발적 신고로 자료를 취득해야 함. 자발적 신고가 아닌 휴대폰 자료수집은 위에 작성된 바와 같이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함.

Tip

학교에서 공익 신고자의 신상이 드러나는 예시

1. 교사의 말 실수

상담 등 대화 도중 실수로 “홍길동이가 그러던데~(길동이구나)”, “3반 선생님이 들었어(3반 학생이구나)” 이렇게 공익 신고자의 이름이나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메신저 캡처 원본을 보여주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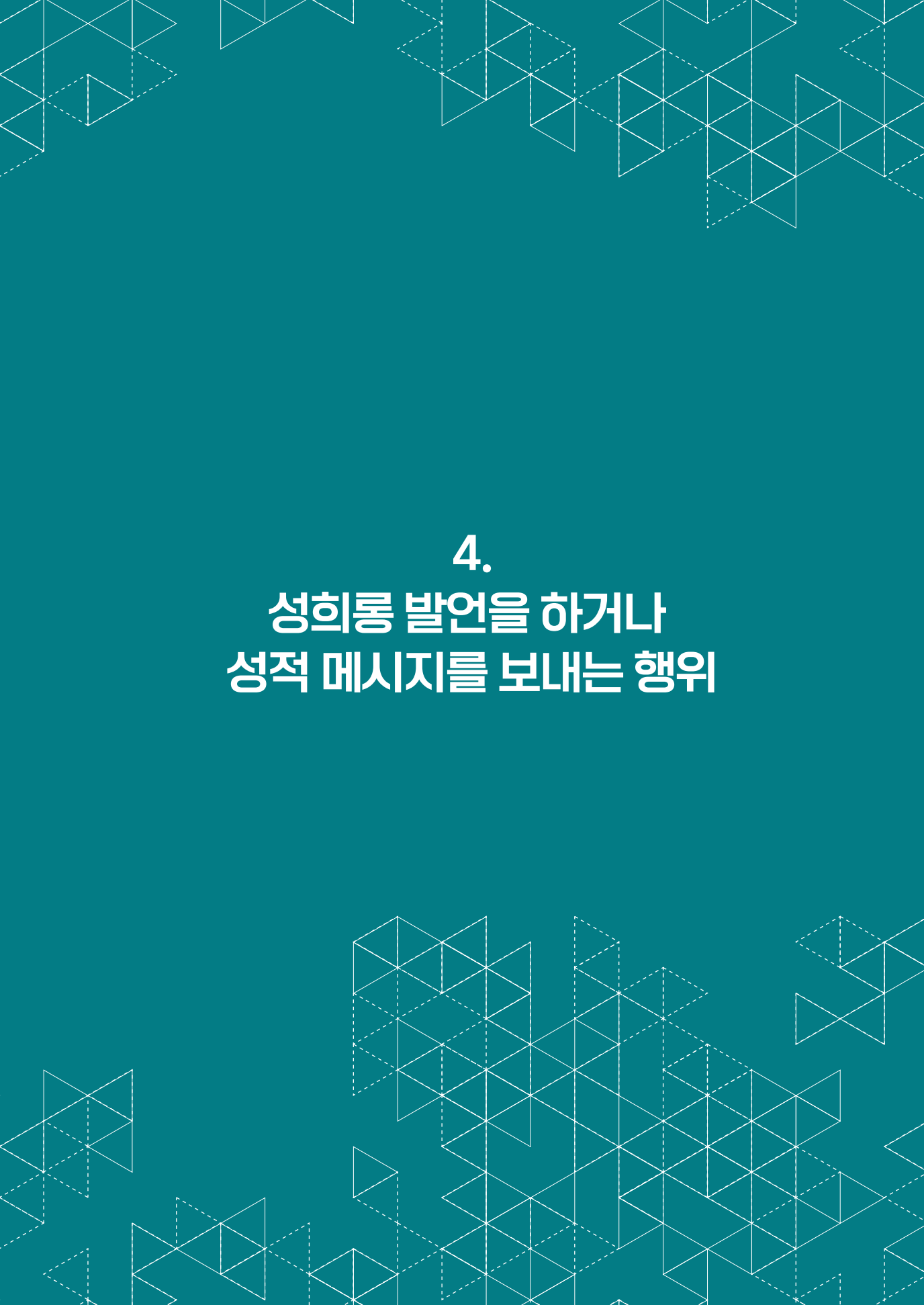
메신저 캡처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가리더라도 그 대화를 캡처한 당사자의 대화는 오른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캡처된 이미지를 관련 학생들이 보게 된다면 이름을 모두 지웠더라도 신고한 학생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의 이미지를 직접 보여주지 말고 텍스트로 된 채팅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캡처원본은 보유하고 있어야 함)

3. 집단상담

관련 학생들 여럿이 모여서 상담을 받게 되면, 자칫 상담에서 빠진 학생 혹은 책임추궁이 덜한 학생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익신고자가 있는 경우 되도록 1:1 상담을 해야 합니다.

4. 기타

정황상 교사가 제보받은 내용을 관련 학생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경우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구일지 특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 등에서 관련 학생들에게는 제보내용을 최소한으로 알려줄 것을 권장합니다.



4.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4.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사례 교사 대상의 성적 발언

고등학생인 A학생은 다른 또래에 비해서 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어느 날 A학생은 수업시간에 전날 저녁에 집에서 본 음란물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교사에게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어요. 농담이라고 하는데 너무 심한 표현에 그날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 위 사례는 고등학생의 성적 언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⁶⁾

성적인 발언을 한 행동에 대해 제지 후 평상심 유지

-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등의 민감한 반응보다는 냉철한 태도를 유지함. 지시하기보다는 상황을 설명함.

문제행동 인식 및 상황 제지

- 성희롱 발언과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교사와 학생 등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임을 인식하게 함.
- 남녀 상관없이 상대방의 성적 의사 결정에 반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며 호기심과 장난에 의한 행위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함.
- 교사뿐만 아니라 친구들 간에도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넘어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학생 간에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안내함. 학생에게 관련 규정을 알려주고 주의를 줌.
-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받거나 채팅방 대화 내용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저장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학급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 다른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설명함.
- 해당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함.
- 일상으로 돌아가 학급 분위기를 안정시킴.

Tip

Wee 클래스, Wee 센터
또는 학교 내 상담인력을
활용하자.

⁶⁾ 사이버 폭력·문제행동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생활지도 가이드북(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5))을 참고하여 작성함.

유의사항 ⁷⁾

단위학교 사안 처리

- 성 관련 문제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있기에 반복적인 조사나 민감한 부분의 질의를 지양해야 함.
- 학교에서는 피해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함. (「교원지위법」 제15조)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이때 성희롱, 성폭력 성립 여부를 예단하지 않아야 함
- 피해교원, 침해학생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분리, 보호하도록 함. 이는 피해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또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조치함.
- 학교에서는 피해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해야 함.
- 피해교원이 요청하고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교육청을 통해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교원지위법」 제15조의4)

예방교육 및 사후교육

-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기 초(3, 4월)에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 실시할 것을 권장하며, 「교원지위법」에 따른 예방교육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함.
- 평소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성평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함.
-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 상담 창구 안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게시판에 상시적으로 게시하고, 비밀보장 및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약속 등 학교 내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도록 함.
- 전문기관에 의뢰해 성폭력 관련 교육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시해야 함(온라인 교육도 가능).

⁷⁾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pp.85-93)을 참고하여 작성함.

궁금해요?

Q1. '음란하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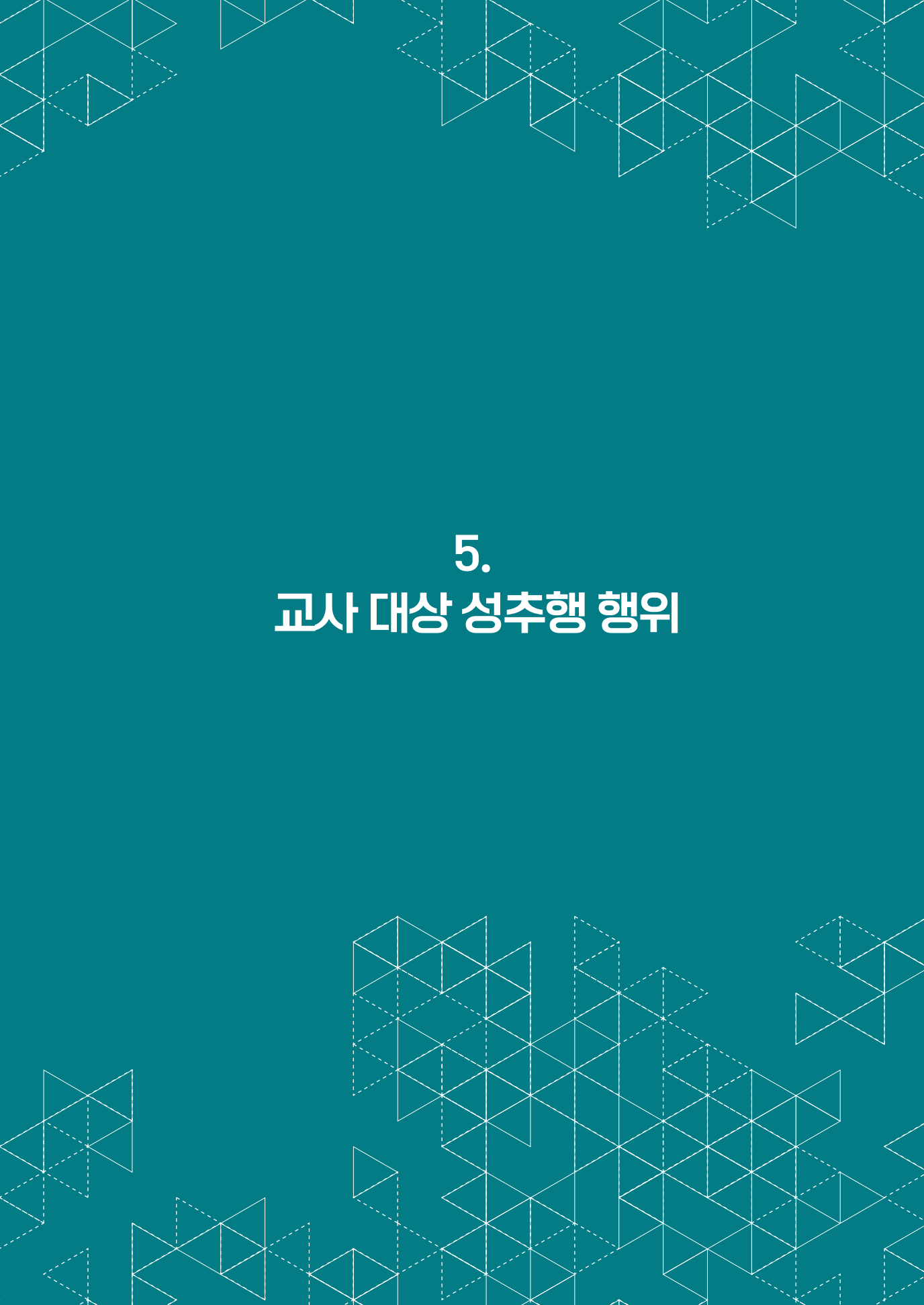
A1. 법원은 '음란'의 개념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이라는 개념이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헌재 2011헌바176, 대법원 2006도3558판결 등)

Q2.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와 성희롱(「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사용)는 어떻게 다른가요?

A2. 성폭력범죄는 위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성희롱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육체적 성희롱(예: 불필요하게 교사의 얼굴, 허리, 손, 허벅지, 어깨, 엉덩이, 가슴 등에 접촉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예: 교사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예: 성적인 사진, 행동을 보이는 행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 교사의 아동에 대한 성희롱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고 자료

- 성폭력예방 기말고사 (www.youtube.com/watch?v=wkQvw5V9cXk)
- 성폭력사고처리 매뉴얼 및 동영상 (cafe.naver.com/ket21/3318)
- 어린이 성폭력예방 (cafe.naver.com/1wjd15qnsdla/22)
- EBS 어린이특집프로그램 '아동 성폭력예방 뮤지컬' (2011. 07. 11.) (<https://www.ebs.co.kr/tv/show?prodId=9415&lectId=3081129>)
- 아동성폭력예방 부모교육 '위험한 10분' (<http://www.youtube.com/watch?v=ptJV8LTQwbk>)



5. 교사 대상 성추행 행위

5. 교사 대상 성추행 행위

사례 불필요한 신체접촉

수업이 끝난 후 질문 있는 학생들은 나오라고 하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여러 학생이 동시에 질문하고 웅성거리려 혼잡한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제 엉덩이를 쓰다듬는 불편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돌아본 자리에는 평소에 질문이 유달리 많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갑자기 제 어깨를 주물러 준다거나 사랑한다며 안기려고 해서 주의를 줬던 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제 눈을 피하며 서 있었어요. 좁은 곳에서 제 몸에 일부러 부딪히면서 지나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학생한테 “너 뭐하는 짓이야.”하고 소리쳤는데, 학생은 반항적인 말투로 “제가 뭘 어쨌는데요? 그냥 질문하러 온 건데요?”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하고 수치스러워서 반사적으로 교실에서 나가버렸고, 이후 교권보호 위원회를 요청했어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교원을 대상으로 갑자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지나가기, 어깨 주무르기, 사랑한다며 안기기, 밀집한 장소에서 엉덩이 등을 쓰다듬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강제 추행)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음.
-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대법원 2009도 13716 판결 등 참조)로,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또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 접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모든 신체 부위에 적용될 수 있어 확실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됨.

성추행 사건 발생 시 대응 방법

성추행 의심 사안에 대한 대응

- 증거가 확실한 사안의 경우, 해당 내용과 목격자, 증거 등을 포함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교내 성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교사(보건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교감 등) 또는 교육활동 보호 담당 교사 등에게 신고함. 피해교원이 직접 사안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즉시 보호하여야 하며, 업무 담당 교사가 사건을 진행해야 함.
- 증거가 불확실한 사안의 경우, 교내 성고충상담원, 같은 학급에 들어가는 동료 교사 등과 상의하여 대응 및 지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가해 의심 학생이 다른 시간에도 의심될 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포함하여 추가 사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음.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며 학생의 미숙함과 인격적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함.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학생을 불러서 “선생님이 그때 내 몸에 손대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니?”와 같이 지도 가능함. 다른 학생의 추행을 목격했음을 말하거나, 대개 자신의 행동을 교사가 인지했음을 알게 되어 재발생되지 않음.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해 교원(들)의 의사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징계, 법원 통고, 경찰 신고, 형사 고소 고발 가능함.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상황에 대한 대응

- 학생들과 안전거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학생들에게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도하거나 장소를 피해야 함.
- 밀집된 장소에서는 성추행 의도 없이 실수로 몸이 닿은 상황일 수도 있음.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학생을 추궁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공개적으로 지목을 당한 학생이 실제 추행을 저지른 학생일지라도, 수치심과 낙인효과로 인해 자살 등 더욱 그릇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음.
-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성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교사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누명을 씌운다며 반박할 수도 있음. 동료 교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여 학생에 대한 적합한 지도 방법을 구안해야 함
- 주위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대화로 사실을 확인하여 녹취할 수 있음. 주위에 CCTV가 있었다면 열람 절차를 거쳐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 정보처리지침에 따라 증거로 확보할 수 있음.
- 명백한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해 두면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음. 학교의 관련위원회나 경찰 조사 등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질문에 기억에만 의존하여 답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의문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급기관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1899-9075),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기 초(3, 4월)에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장함.
- 학생들의 행위가 성희롱·성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성추행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하도록 초기에 지도함. 예를 들어, 교사와 대화할 때 교사의 옷깃이나 가방, 손목 등을 자신의 몸쪽으로 잡아당기거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교사와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교사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포옹하는 행위,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교사에게 호감을 보이고 안기거나 다리,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 등은 성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려주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함.
- 학생들이 자칫 왜곡된 성의식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음란물을 접하기 쉬운 환경으로 인해 왜곡된 성의식을 갖기 쉬움. 예를 들어,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 우연 혹은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계기가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매체를 접하면서, 학생들은 그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왜곡하여 이해할 수 있음.
- 상대방의 허락 없이 상대방의 몸에 접촉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며, 폭행이나 성추행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교육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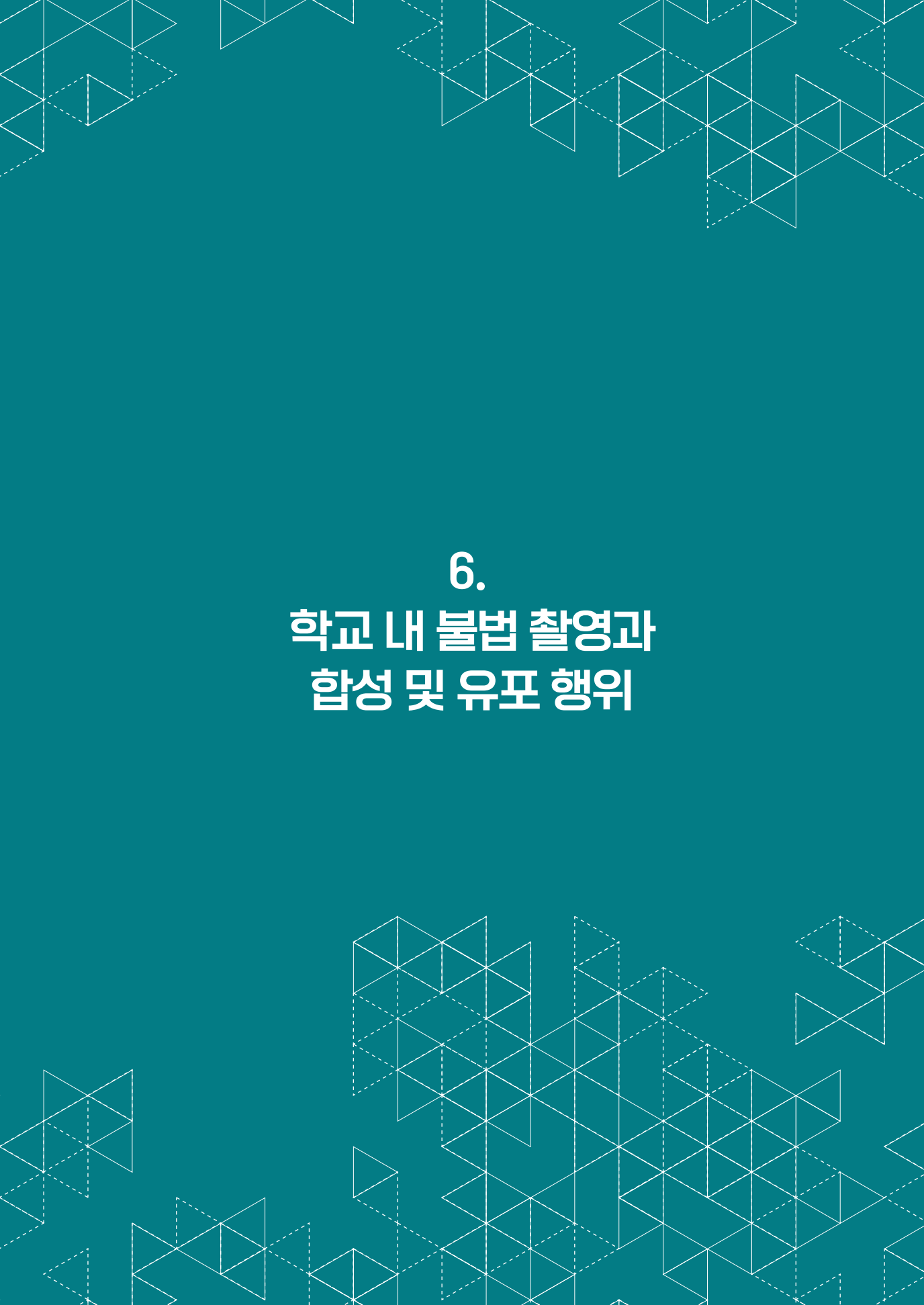
단위학교 사안 처리

- 피해교원 보호: 학교에서는 피해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
- 사안 관련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 또는 보호자 등)의 신원이 사건 해결 과정과 무관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 피해 사실이 알려진 경우, 관련자들을 안정시키고 침착하게 대응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폭력 범죄이고, 개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이므로 관련 사실을 함부로 알리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함. 관련 사실을 유포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함.
- 학교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며 공감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 ‘별거 아닌 일로 너무 예민한데? 우리 때는 더 했어.’, ‘인기 많아서 좋겠네.’, ‘나이 들면 그런 일 안 생기니까 시간이 해결해줄 거야.’ 같은 언행은 동료교원 간이라도 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주의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함.
- 언론 등 학교 외부로 알려져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중하게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성고충상담원이나 담당 부장, 교감 등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 중 1명을 업무담당자로 일원화하고 적절히 지원해야 함.

⁸⁾ 교육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pp.86-98.

참고 자료

- 여성긴급전화(☎1366) (<https://www.women1366.kr>)
- 한국여성인권진흥원(<https://www.stop.or.kr>)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으로 검색)
-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가능)



6. 학교 내 불법 촬영과 합성 및 유포 행위

6. 학교 내 불법 촬영과 합성 및 유포 행위

사례 1 수업 중 불법 촬영 및 합성 유포

제가 수업하는 모습이나 계단 올라가는 모습, 교실에서 치마 속까지 촬영당한 사진 파일이 학급별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갤러리 등을 통해 전교생과 인근지역까지 돌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수업 중 과제를 푸는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해서 그 자리에 가서 설명해줄 때도 뒤에서 다른 학생이 몰래 찍었던 것 같고요.

단톡방에서 제 사진이 공유될 때는 제 얼굴에 음란한 사진이 합성되기도 했고,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성적인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제가 아끼고 많이 도와줬던 학생들도 포함돼 있어서 너무나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사례 2 여교직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후 나오다가 적발

여교직원 화장실에서 남학생이 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 여기서 나오냐고 물으니, 용변이 급했는데 휴지가 없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학생은 인권 침해라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소지·구입·저장·시청하거나(성폭력 처벌법 제14조)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 또는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 등 위 사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음.
- 관련 피해가 급증하여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임. 고해상도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인해 특정 신체부위를 집중하여 촬영하지 않더라도 부분 확대가 가능하여, 불법 촬영 및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허락 없이 교사나 주위 학생을 포함하여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개정 신설됨(2021.10.1.). 수업 중인 교원을 불법 촬영하여 무단으로 배포하고 공유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음.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 대응 방법

신고학생에 대한 보호

-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목격한 학생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유포물을 전송받거나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함.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고자질했다는 죄의식을 가지기보다는 친구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함.
- 증거가 되는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캡처, 저장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저장한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비활성화, 삭제 조치하여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단체대화방의 내용과 사진 파일을 확보한 후 관련 학생들에게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함.

현장 적발 시 대응

- 불법 촬영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일단 주의를 준 후 교내 성고충상담원(보건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교감 등)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불법 촬영 정황이 뚜렷하지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휴대폰을 숨기거나 파일을 삭제하지 않도록 생활지도부 등으로 즉시 인계하고 조사에 협조를 구함. 이를 거부한다면 학교전담경찰 또는 112에 신고하여 휴대폰 검사 등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학생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거나 관련 영상을 삭제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사안이 더욱 중해질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함(포렌식으로 복구 가능).
- 수사기관 신고에 대하여 보호자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미리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 설득과 지도에 협조를 구할 수 있음. 하지만 교사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범죄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차분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며, 주위 교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신속히 학생을 사안 담당교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인도해야 함.

피해교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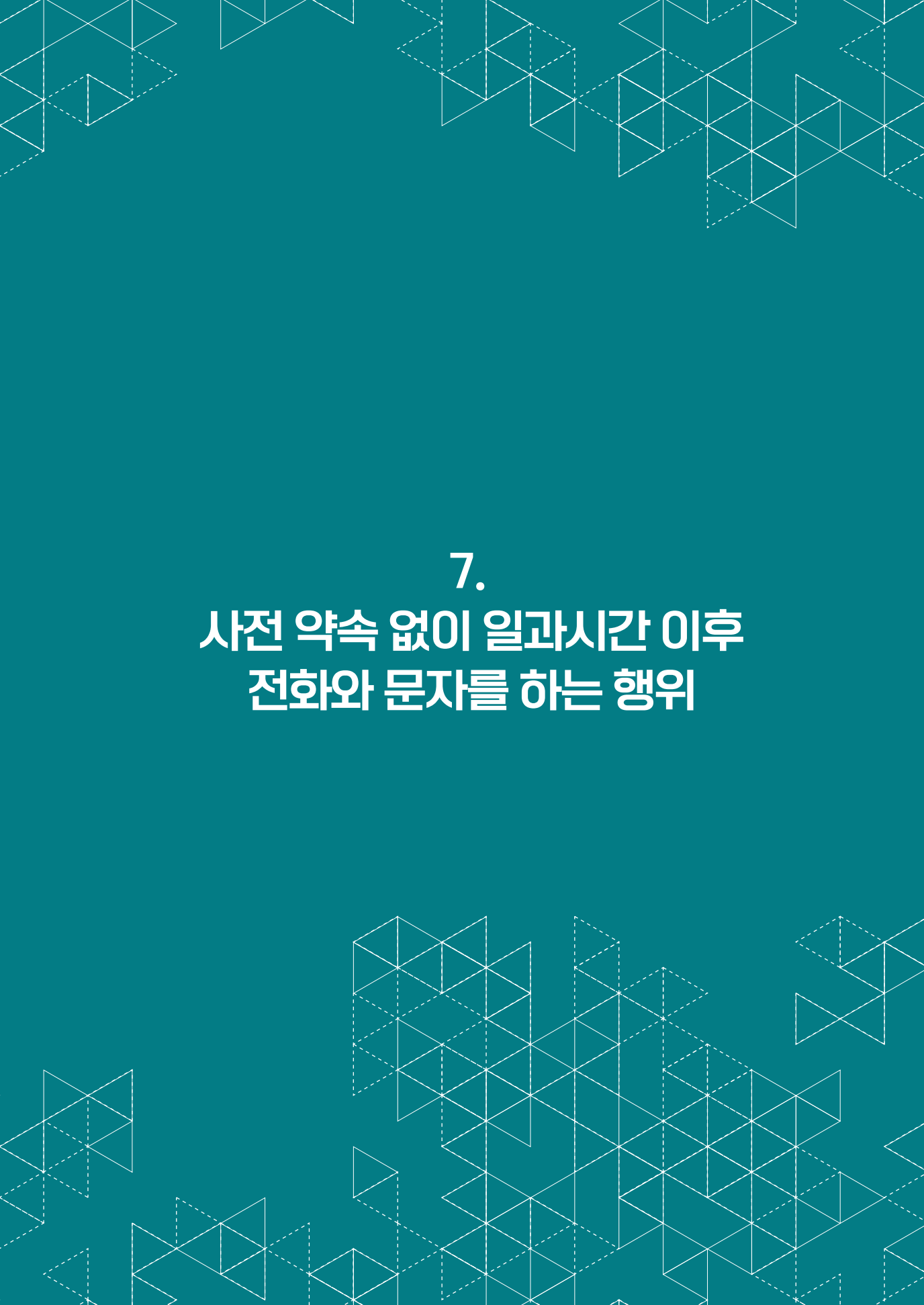
-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교원에 대하여 특별휴가(5일 이내), 학교장 허가 공무상 병가(6일 이내), 일반 병가, 연가 등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하고,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도록 안내함.
- 조사 결과 타 교원, 학생, 일반인 등 추가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피해 교원 본인이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가 가능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를 통해 유포물 삭제 및 추가 피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호르몬란, 공황발작, 분노, 우울증 등과 같이 심리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나 상담교사의 안내를 받아 전문상담을 진행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약물 치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우리 때도 거울로 보고 그런 일 많았는데.’, ‘인기 있고 예쁘니까 그런 일도 있지.’, ‘앞으로 교직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식 키워 봐, 아이들 다 그럴 수 있어.’ 등의 말은 피해교원에 대한 2차 가해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징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극히 주의해야 함.

침해학생에 대한 지도

- 불법 촬영, 촬영을 도운 행위(공동정범), 촬영을 시킨 행위(교사범), 촬영물을 합성(음화제조), 촬영물을 유포(음화반포,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시청한 행위 포함)는 모두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 성범죄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학, 퇴학 조치가 가능한 사안임.
- 침해학생 측이 피해교원에게 직접적으로 만남과 합의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압박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기를 권장함.
- 사안 종료 후 침해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학교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함.

참고 자료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https://d4u.stop.or.kr>)
02) 735-8994 (평일 10:00-17:00)



7. 사전 약속 없이 일과시간 이후 전화와 문자를 하는 행위

7. 사전 약속 없이 일과시간 이후 전화와 문자를 하는 행위

사례 1 일과시간 후 잦은 문의전화

A학생은 평소 덩벙거리고 자기 물건을 잘 잃어버리며 알림장도 제대로 쓰지 않아 학부모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A학생의 담임교사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A학생 학부모의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아침 등교 전 전화를 걸어서 시간표를 물어보거나 퇴근 직전에 분실한 스마트폰을 찾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월요일 준비물 같은 것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겁니다. 클래스팅에 올려놨다고 말했지만 컴퓨터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항상 끝에 죄송하다는 말을 붙여서 화가 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사례 2 교육과 관련 없는 개인상담을 교사에게 원하는 경우

B학생의 학부모는 퇴근 시간인 6시30분 이후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십니다. 대화의 시작은 항상 B학생의 수업태도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B학생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그 때부터 학부모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저녁에 전화가 오거나 심야시간까지 이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수업 때도 지장을 받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행위로, 이때 '교육활동'은 「학교안전법」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음.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교원이 출근하여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 행하는 교육활동,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이 포함됨. 그리고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된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에 행하는 활동,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시간 전 또는 퇴근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 교육에 관한 상담 등을 교육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음.

사전 약속 없이 일과시간 이후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경우 대응 방법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 학교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원활한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다양한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학부모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 권장함.
- 일과시간 이후 문자 등 SNS로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교원은 문자 등 SNS를 이용하여 학부모와 상담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명시하여 학교로 방문하여 줄 것을 알려주고 이후 발생하는 연락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 방법도 있음.

Tip

일과시간 후 교사에게 연락하기 전 고려해야 할 2가지 사항

1. 교사가 이 일의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가? 혹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

-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프다’, ‘아이가 가출했다’와 같은 일은 교사보다 119나 112에 신고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교사에게는 문자통보만으로도 충분하며 큰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안내함. 반드시 알아야하나 회신이 필요 없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함.

2. 응급 상황인가?

- 교사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교사에게 알려야 할 만큼 응급한 상황인지 판단하여 연락하도록 안내함.
- 준비물 준비, 시간표 확인, 체험학습 신청 등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준비할 수 있거나 다른 경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전화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함.

※ 위 2가지를 고려하여 모두 해당되면 전화 연락이 가능함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해도 좋을 것임.

전화나 문자만이 아닌 다른 소통창구 운영

- 클래스팅이나 밴드 등과 같은 원격 창구를 개방하여 소통하도록 안내함. 게시글 작성을 통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일과 중에 자주 확인함으로써 일과시간 이후 학부모에 의한 연락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여러 사람들의 공개 게시글로 인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1:1 상담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을 추천함.

유의사항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을 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

- 대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생활 중 마주치게 되는 선택의 순간에 교사의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을 해오게 됨. 이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런 경우 무조건 학교 대표번호로만 문의를 받게 하는 등 소통창구를 줄이게 되면 소통을 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며 학교와 가정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일과시간 이후 연락의 횟수와 정도가 심각하여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학부모와 소통할 필요가 있음.

일과시간 이후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한 예방활동 강화

- 학년 초 학부모회와 같은 자리를 통해 교사의 업무시간에 대해 안내함.

Tip

안내문구 예시

교사는 학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일과시간 이후 다음날 수업을 위해 수업연구를 하고 체력을 충전하고 가정에 헌신하는 일반인이 됩니다. 일과시간 이후를 위와 같이 보내며 이 시간을 통해 힘을 얻은 교사는 질 좋은 수업을 계속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차원에서 긴급 상황이나 특별한 경우 연락할 학교 대표번호를 정하거나 학교 실정에 맞는 별도의 방법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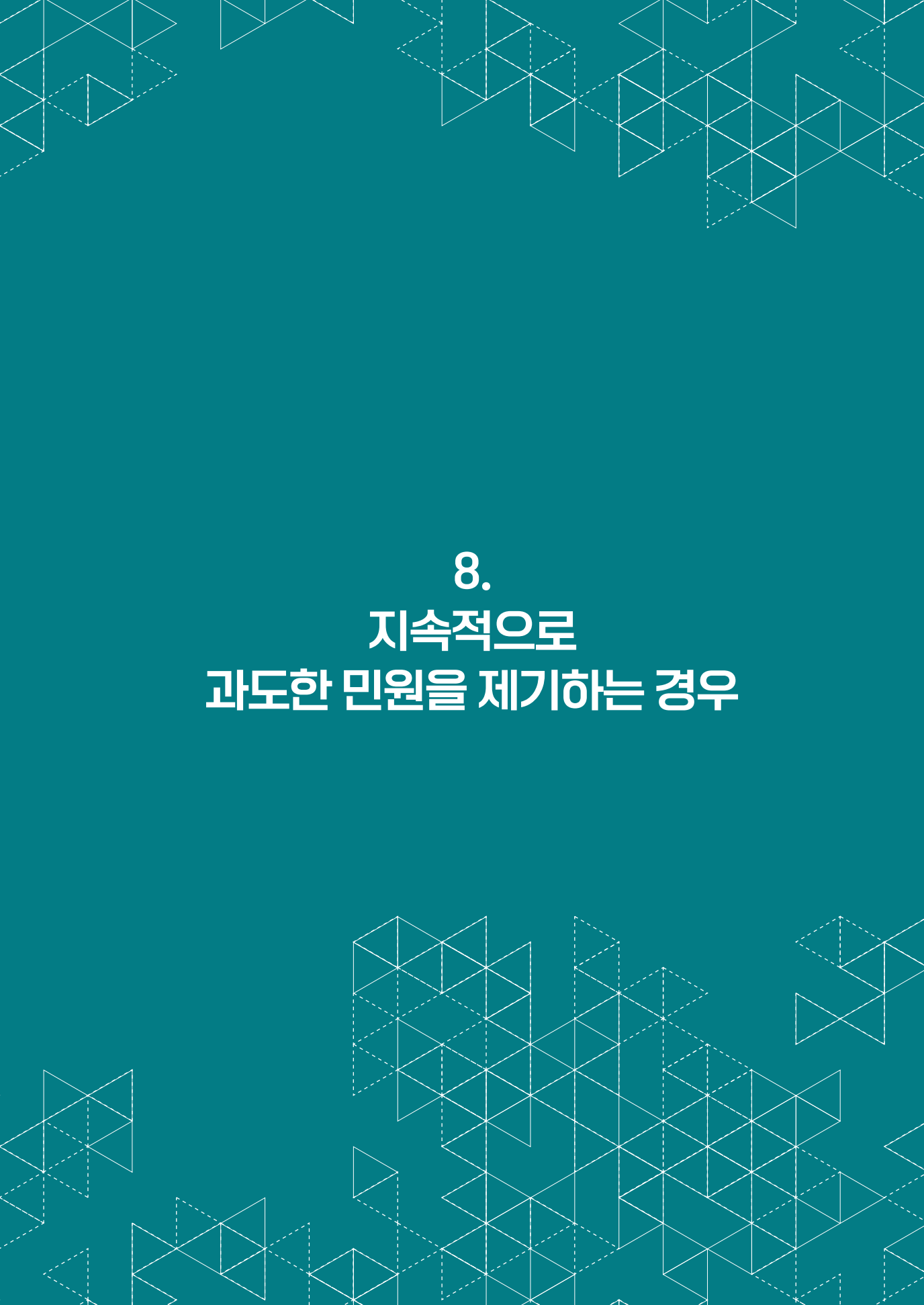
궁금해요?

Q1. 일과시간 이후에 유선상으로 학사업무에 잦은 간섭을 하는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A1. 지속적인 간섭을 하여 이 행위가 미래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의 반대말은 “일시적”이므로 연락의 느낌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속적인 연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학부모님께서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며 언제든지 상담을 원할 때 연락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제 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A2.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개인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의무는 없으나 원하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부모님의 불만이 쌓여서 민원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리기 어렵다면 홈페이지, SNS 등 다른 소통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8. 지속적으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8. 지속적으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사례 1 학부모의 지속적이고 부당한 요구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담임 교사에게 시간과 상관없이 전화하여 질문을 하고, 자녀의 교실 자리 배치와 보건실 이용 등 학교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사례 2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본인의 의사 반영 요구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하여 민원담당 직원에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교실에서 자습을 시켜달라’고 교감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한 뒤, 1시간 후 교감선생님께 잘 전해주었는지 확인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 학부모는 자주 학교에 전화하여 본인은 ‘학부모’라고만 하면서 의견을 주고, 반영이 곤란하다고 하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학생, 학부모 등이 정당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거나 제안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 시간, 장소 등과 상관없이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음.
- 단, 적법한 절차를 밟은 민원 제기나 교원과 사전 조율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와는 구분되어야 함.

지속적이며 과도한 민원 제기에 대한 대응 방법

학교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학부모 참여 공식화

-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교육기본법」 제13조 제2항).
- 보호자(학부모)는 교육의 한 주체로서 민원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안하도록 학년 초에 안내하고 교원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여건을 조성함.
- 학교알리미를 활용하여 학생, 교원현황, 시설, 학교폭력 발생 현황, 위생, 교육여건, 재정상황, 급식 상황, 학업성취 등과 같은 학교의 주요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함.

교육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허위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⁹⁾

- 감사 대비 사건 경위서, 일지 작성 및 증빙자료 확보: 사건 경위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일지는 일자별 내용 기재, 목격자 사실확인서 및 진술(녹취) 확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함.

학부모에게 적절한 민원제기 방법 안내

1) 민원제기 대상 설명

- 학급의 문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와 문제는 교과 담당교사에게, 업무 문제는 업무 담당교원에게 먼저 문제를 설명함.
-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다른 교원, 다른 학교 등과 비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안내함.

2) 학생 학습권 최우선 고려

-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학부모의 민원제기로 인해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내함.
- 학부모의 요청이라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특히 본인의 자녀만을 위한 요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답변함.

⁹⁾ 경기도교육연구원 원격연수원(2021).

3) 학교방문 절차(사전 예약제 운영) 안내

예시

- 사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고 면담 예약을 함.
-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행정실 또는 민원실에 가서 방문증을 부여받고 방문 기록을 남김.
- 방문증을 패용하고 지정된 면담 장소에서 교사와 상담을 함.

민원인에 대한 응대 방법 ¹⁰⁾

1) 민원 상담 응대

-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면서 중요하거나 잊어버리기 쉬운 내용은 메모하고, 적절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대답을 하며 공감을 표시함.
- 민원인과 상담할 때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함.
- 민원인이 반복해서 질문하는 경우,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자신의 업무 범위만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임.
- 현장에서 바로 처리되지 않는 민원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함
- 민원인이 돌아갈 때 공손하게 인사함.
- 담임교사나 업무담당자에게 예약 없이 방문한 경우에는 용건을 묻고 대기할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하고, 해당 교사에게 미리 알려서 당황하지 않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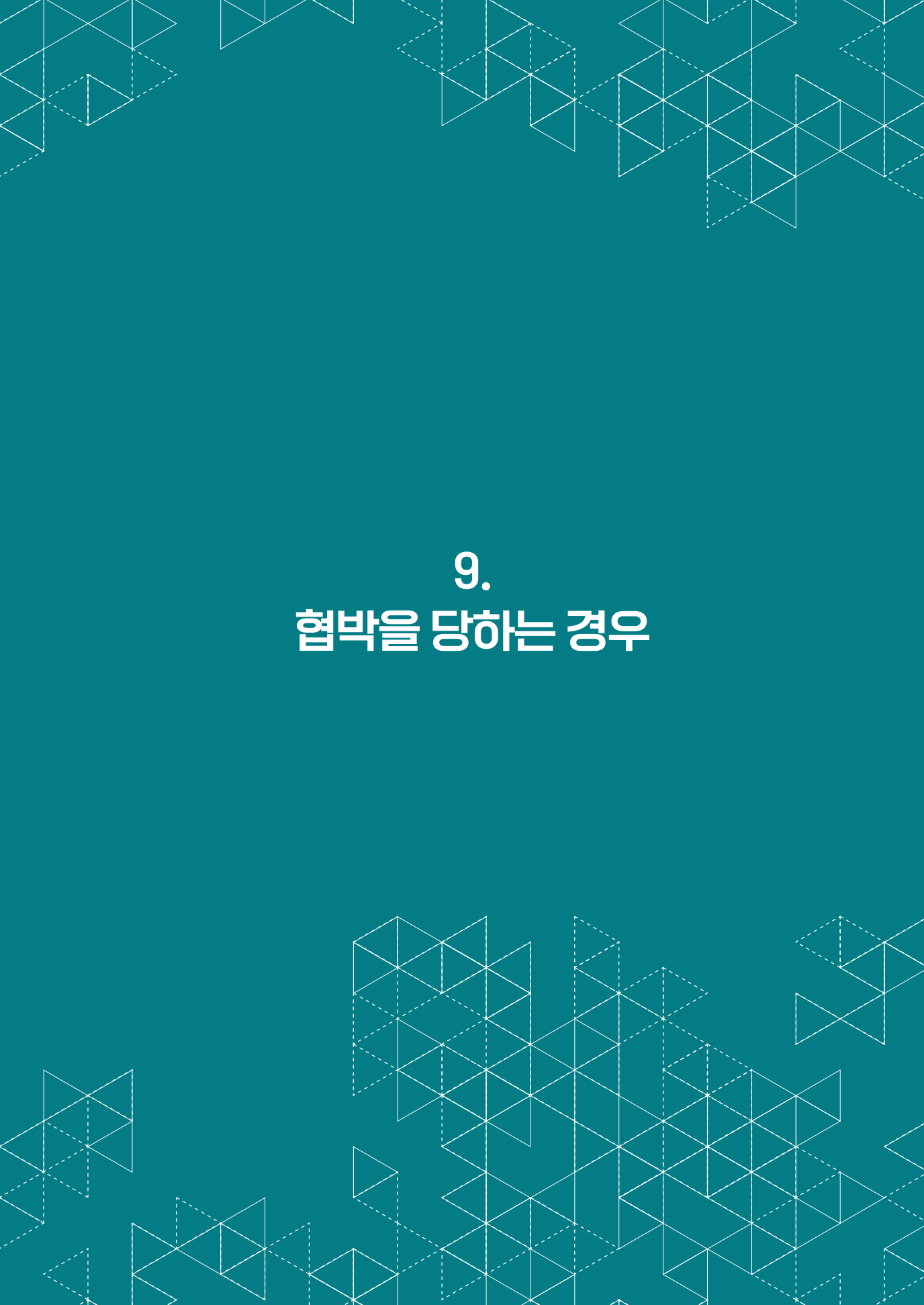
2) 불만 민원에 대한 응대

- 상담 중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민원인과의 마찰 또는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빠르게 부장교사나 교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마찰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함.
- 민원인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경우는 관련 제도와 법령 등을 쉽고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며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함.
-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그동안의 민원신청 · 답변 내용을 다시 설명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
- 상급자나 기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면담 요청 사유를 물어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민원의 세부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담당자임을 안내함. 그래도 상급자 면담을 계속 요청할 경우 교감에게 보고하고 상황에 맞게 면담을 실시함.

¹⁰⁾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대민친절 응대방법'중에서 발췌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변경, 추가, 삭제 요구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므로 학부모의 이의 제기 및 의견 제시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무조건 교육활동 침해라고 할 수 없음. 또한 학부모의 다소 무례한 태도와 행동이 불쾌하였다고 해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단, 그 과정에서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행, 폭력적인 행동, 기타 별도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다면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넘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대처할 수 있음.



9. 협박을 당하는 경우

9. 협박을 당하는 경우

사례 1 교사에게 해악을 예고하는 경우

A학생은 상습적으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며 돈과 물건을 빼앗고 때렸습니다. 어느날 다른 학생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본 B교사는 A학생과 그 일당들을 면담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부득이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여 처리함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A학생은 반성하기는커녕 학폭위에 자신과 친구들을 회부하면 B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학생은 B교사에게 “자신들이 학폭위에 회부될 경우, 학교를 피바람이 난무하는 생지옥으로 만들겠다.”, “선생님에게 초등학생 따님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학폭위를 진행하면 따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와 같은 협박편지를 지속적으로 투서했습니다. B교사는 이 편지들에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으나 만에 하나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다칠 것에 대해 걱정되었습니다.

사례 2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우

C학생과 학부모는 얼마전 공개된 수행평가 결과에 불복하여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평가를 준비했고 제출했는지 큰소리로 주장하였으나 D교사는 C학생이 수행평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다시 제출기회를 주었으나 그마저도 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야기가 통하지 않자 학부모는 “내 아이의 수행평가 성적을 올려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교사를 협박하였습니다. D교사는 두려움을 느껴 C학생에게 수행평가 기회를 다시 줘야하는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교원지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하나인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임.
- 사례 1의 경우 가족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B교사에게 충분히 공포감을 줄 수 있으며, 사례 2의 경우 학부모가 자살을 통해 D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임을 예고하여 두려움을 주었으므로 두 사례 모두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협박’에 해당됨. 특히 사례 1의 A학생과 주변 친구들이 집단으로 B교사를 협박하는 경우라면 특수협박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협박성 발언이라도 단순한 감정적 욕설, 일시적 분노의 표시, 해악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

협박에 대한 대응 방법

초기 대응

- 사안 발생 시 즉시 피해교원과 침해자를 분리하여야 함. 피해교원의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심리 치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협박의 경우 본인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성립되므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적대응까지 가능함.
- 침해자의 협박성 편지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장난이었다”, “실제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면서 협박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잘못된 행위임을 고지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함.
-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 되었음에도 해당 학생과 학부모가 무고함을 주장하며 협박을 지속한다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나 분쟁조정,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학교장 통고제도 (학생의 경우만)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함.

유의사항

교사의 안전 확보 및 증거수집

- 협박이 발생했을 시 대상이 된 교사와 침해자를 분리하고, 상황의 경중에 따라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 복도 등 최대한 시야가 많이 확보된 장소에서 대화를 하고, 필요 시 녹취를 하여 증거를 확보함. 주변에 다른 학생 등 제3자가 있다면 증언을 받아둘 수 있도록 함.
- 수업 중 학생에 의해 협박을 당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방식은 아동학대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음. 차분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학교 교권보호담당관(교감 등) 등의 도움을 받아 교사를 긴급히 보호하고 학생과 일시 분리될 수 있도록 함.

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혹은 법적 대응

- 교권보호위원회의 중재(분쟁 조정)로 서면사과, 피해보상 등을 통해 마무리 가능하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협박’의 경우 형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사과와 보상,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

협박의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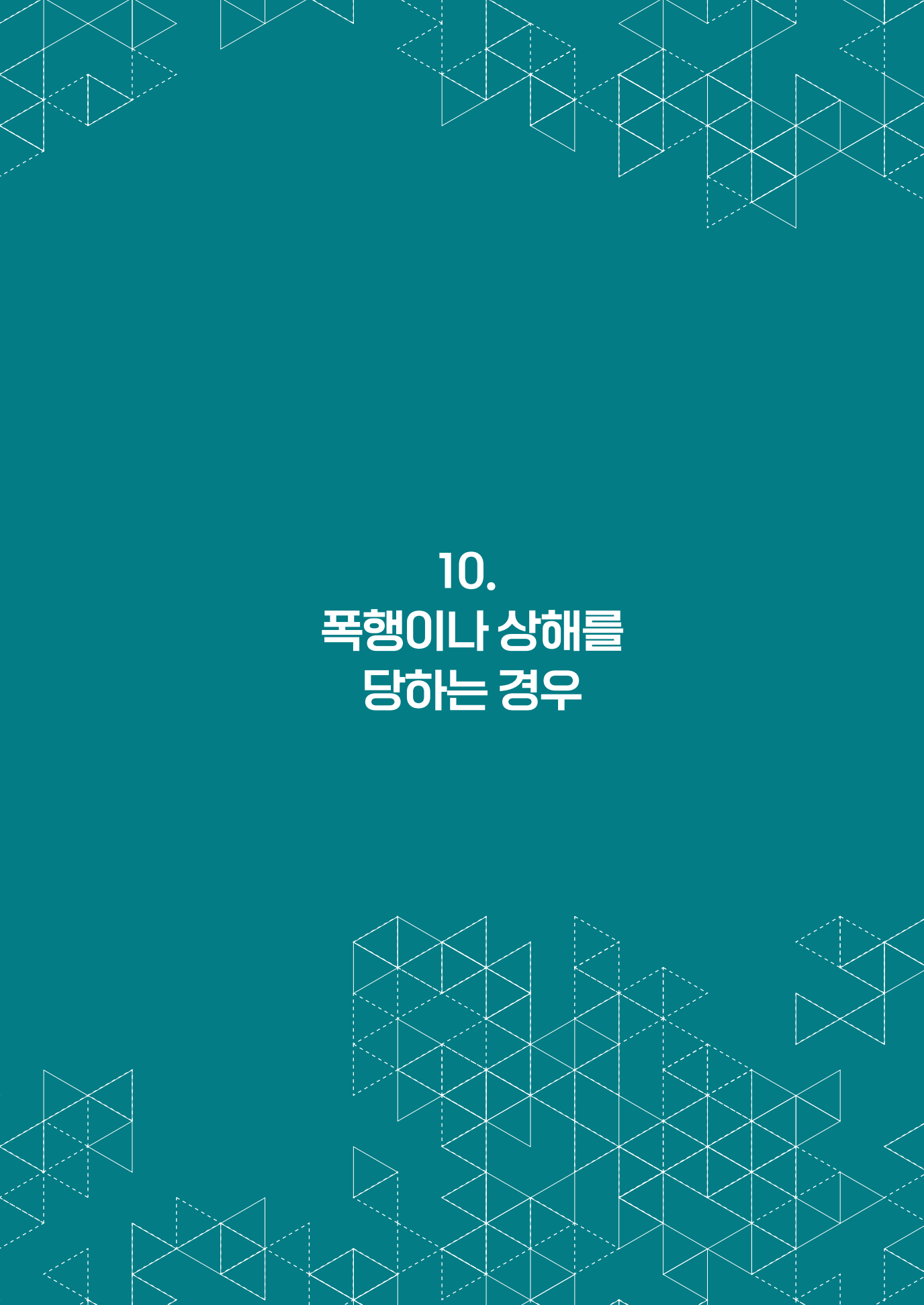
- 학생, 학부모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활히 소통하여 긍정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함.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담센터(Wee센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같은 민원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의 불만이 쌓이지 않고 제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Q1. 단순경고와 협박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 A1.** 단순경고는 발언자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고, 협박은 발언자가 ‘어찌 할 일’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소풍가면 천둥벼락을 맞게 될 겁니다.”,
“아이를 체벌하면 선생님은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경고이며,
“내일 소풍가면 제가 가서 방해할겁니다.”,
“아이를 체벌하면 선생님도 저한테 맞을 겁니다.”라고 말했다면 협박입니다.

Q2. 명예훼손과 협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A2.** 명예훼손은 특정성(피해자 특정)과 공연성(제3자에게 전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협박은 본인에 대한 위해가 예고되었다면 앞선 특정성, 공연성이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협박행위가 공무(교육활동)중 발생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10.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는 경우

10.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는 경우

사례 수업방해, 손괴, 폭행 및 상해

산만한 행동을 자주 하는 A학생은 오늘도 수업 시간에 책상 위에 탁구공을 올려 놓고 계속 튕기면서 옆 친구들에게 말을 겁니다. 제가 주의를 주어도 “왜 저만 갖고 그래요? 저 애도 시끄럽게 하는데요.”라면서 반항합니다. 공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압수한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서 결국 저는 학생에게 다가가 탁구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A학생은 화를 못 이겨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더니 탁구공을 돌려달라면서 볼펜으로 제 손을 찌르고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팔을 깨물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교원지위법」상 상해 및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함. 위 사례의 경우 학생이 교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 중 1호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함. 단,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힘을 행사한 경우에만 성립되기 때문에 교사 주변의 물건이나 시설에 힘을 가하여 파손한 경우는 ‘손괴’ 등의 침해행위 유형으로 볼 수 있음.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 방법

학생의 행동 이해 및 적절한 교육 방안 구안

- 학생의 과잉행동을 질병이나 골칫거리로만 바라보기보다는,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실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현실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함.
-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틱장애(근육이 빠른 속도로 리듬감 없이 반복해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장애) 등은 신경정신과적 문제에서 비롯되어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이거나, 교사가 학생의 도덕성 문제로만 여기고 지도한다면 학생은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쌓다가 과잉 행동을 갑작스레 표출할 수 있음.
- 특수교육이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특수교사나 상담교사와 상의하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해야 함. 강제할 수 없으나 추후 학교 규칙 위반이나 교육활동 침해, 폭행 등 행위가 재발생한다면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
- 학부모가 진단 검사나 상담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실시할 순 없지만, 각종 위원회를 통해 특별교육 처분을 받는다면 특별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학생들이 학업, 교우관계, 가정 내에서의 생활 등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다른 학생에게 향하면 학교폭력, 본인에게 향하면 자해·자살, 교사에게 향하면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인성 교육, 긍정 심리, 회복탄력성 훈련, 명상 이완 요법 등을 통해 평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함.

폭행, 상해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의 대응

- 평소 학생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여, 흥분 상황에서의 감정 폭발을 줄일 수 있음.
예: (수업에 참여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수업에 집중해줘서 고맙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해줄 수 있지?
- 교사가 학생의 위험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붙잡는 등 신체 접촉이 발생하거나 힘으로 막으려다 보면 학생은 교사의 지도에 대해 성추행, 쌍방 폭행,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더 크게 반발할 수 있음. 교사의 안전이 확보되고 학생 긴급 구조를 위한 접촉 등 이해 가능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신체 접촉이 가능함.
- 학생이 스트레스를 급격히 표출하여 과하게 흥분할 때 질문을 통해 흥분을 진정시키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함. 이때 교사의 신변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함.

Tip

질문 예시

- “○○아, 하나! 둘! 학급 규칙 중 어기고 있는 게 있는데 뭘까? 그러면 조절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지?”
- “진정하고 우리 천천히 숨을 쉬어 볼까? 하나, 둘, 셋, 하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셋 셀 동안만 숨을 참아보자. 하나, 둘, 셋. 이제 좀 진정이 됐으면,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글로 써볼 수 있겠니? 차분하게 알려주면 최대한 도와줄게, 여기 앉아볼까?”
-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하도록 잘 듣고 도와줄 테니까 수업 끝나고 점심시간에 상담실로 와보겠니?”

폭행, 상해의 사안 발생 시 대응

- 주위에 도와줄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혼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교무실로 우선 피신하여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에게 도움을 청함. 이때 도움을 요청받은 교사는 피해교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심리적 안정을 돕고, 교실에 입장하여 다른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수습하며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함.
- 상해 발생 시 보건교사를 통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동함. 응급처치 직후에는 폭행 부위를 다각도로 촬영하고, 폭행 부위와 교사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도 함께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피해 입증이 쉬움.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무기록을 남기도록 함.
- 피해교원은 침해학생 또는 침해학생의 학부모(보호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교육활동 보호 담당교사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도록 권장함.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함.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신체적 상처가 치료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심리 불안과 무력감에 빠질 수 있음. 필요 시, 특별휴가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전문상담, 심리치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유의사항

학교의 후속 조치

- 교내에서는 사안 조사 및 침해학생과 목격자 확인서 작성. 학교전담경찰 등에 협조 요청함.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사건 발생 직후 119와 112로 신고해야 함.
-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침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하거나, 피해자 및 침해자가 원할 경우 분쟁 조정을 진행함. 학생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침해자가 학부모 등 성인인 경우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음. 피해 교원이 직접 고소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관할청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음.
- 상해 및 폭행의 경우 1회 발생 시에도 전학 및 퇴학 조치 가능함. 단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자(중학생 이하 및 특수교육 대상자인 고등학생)는 예외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은 폭행 사안은 전학보다 낮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 침해학생 역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분노조절을 위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며, 퇴학 시에도 관련 기관과 연결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함.
- 경찰을 통해 형사 고소·고발 조치를 거치지 않더라도 학교장을 통해 법원에 직접 통고 가능함.

Tip

학생의 주의 집중을 돕는 전략

-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해당 학생을 교사 가까이 앉힘.
- 대화하는 동안 가까이 가면 말에 집중할 수 있음.
- 문, 창문, 또는 연필깎기와 같은 것으로 산만해지지 않도록 환경을 조절함.
- 친절하고 성숙한 학생과 짝을 지어서, 학생이 집중이 흐트러졌을 때 알림을 주거나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줌(짝에게는 멘토 역할을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기 등으로 보상할 수 있음).
- 타이머, 녹음된 시간 신호 또는 구두 신호를 사용하여 학생 활동에 남은 시간을 표시하기, 컴퓨터 조작 역할 등 책임감을 부여함.

부드러운 배경 음악으로 집중을 도움

- 사전에 노래 신청을 받아 재생 목록을 만들어 틈틈이 들려주면, 조용히 하라는 말을 적게 해도 됨.

학생이 자주 움직이도록 기회를 허용하기

- 학습 준비물, 심부름, 칠판지우기 등의 기회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함.
- 학생이 작은 장난감 또는 조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잡도록 허용함.
- 수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서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함.
- 부정적인 행동의 결과로 휴식 시간을 금지하지 않음. ADHD 학생은 쉬는 시간 동안 발생하는 신체 움직임으로 도움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운동 후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음.

학생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즉각 수시로 제공하기

- 잘하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즉시 칭찬함.
- 칭찬스티커도 훌륭한 보상이 될 수 있음.
- 사소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 부정적인 행동은 못 본 척함: 못 본 척하는 솜씨(The Ability to Ignore)¹¹⁾
- 생활기록부에 긍정적 변화 기록하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려줌(기록 내용은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침에 의거, 당해 연도에 직접 보여주진 않도록 주의).

¹¹⁾ 토드 휘태커(2009).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그들의 17가지 특성에 대한 탐구. 지식의 날개.



Ⅲ.

그 밖의 학교 내 문제 상황과 대응 방안

1.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자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자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례 수업 참여 거부 및 지도 불응

국어 수업을 하던 중에 A학생은 수업이 재미없다며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로 풀어보려는 교사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지속해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였습니다. 교사가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수업 시간 중에 자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행위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수업 방해나 교사의 지시 불이행이 지나칠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선도(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수업을 방해하는 수단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모욕 등)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자는 학생을 깨웠는데 아예 드러눕는 경우 등과 같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수업을 방해하거나 자는 학생에 대한 대응 방법

교사의 감정조절

- 수업 중 지속적인 학생의 방해 행동에 대해 교사가 감정적으로 학생을 대할수록 학생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짐. 교사가 먼저 감정을 조절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교사의 감정을 조절하려면, 학생의 행동과 학생을 구분해서 봐야 함. 즉, 학생이라는 존재와 학생의 행동을 구분하여 학생이라는 존재 자체는 존중하되, 학생의 행동에는 일관적인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교사의 조절되지 못한 감정은 학생에게 전달되어 교실 분위기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음. 또한, 교사의 조절되지 않은 감정이 학생에게 전달되면 추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짐.
- 교사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경우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학생을 불러 대화를 시도해야 함. 교사에게 중요한 것과 교사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언행의 진짜 의도 등을 물어본 후 수정할 것을 부탁하거나 다른 방식의 표현을 권할 수 있음. 감정적으로 진정하고 대하되, 과격한 행동을 보이면 학칙에 따라 관련 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를 개최하여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함.

학생의 행동 이해

-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학생이 교실 상황에서 자존감과 소속감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음. 즉, 교실 상황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자존감)과 교실 내 집단에 자신이 소속되었다는 것(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낯선 행동을 할 수 있음.
- 학생이 보이는 낯선 행동에는 그 학생이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 신념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해석체계가 숨겨져 있음. 학생의 숨겨진 신념과 잘못된 해석체계는 짧은 시간 내에 수정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함.

지나친 관심을 요구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

- 지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예: 보건실 가기, 볼펜 소리내기 등)은 학기 초 약속을 정하여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책을 읽도록 부탁하거나 준비물을 나눠주는 등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부탁함.
- 교사가 문제 행동을 알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I-메시지¹²⁾를 통해 교사의 불편한 마음을 전달함. 학생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받지 않도록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수업이 마무리된 후 개별적으로 시간을 갖고 문제에 관해 이야기함.

학생과의 힘겨루기에 대한 대응

- 학생이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학생의 힘과 욕구를 학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관심 있는 부분 3분 말하기’나 자료를 만들어 발표할 기회를 주어, 학생의 지적 욕구를 격려하며 수업에 도우미로 참여시킴.
- 낮은 행동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특별히 관심을 주지 않거나, 수업에 도움을 줄 방법을 안내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줌.
- 교사의 언행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반항할 때는 교사의 감정을 조절하고 한 걸음 물러난 후, 수업이 끝난 후에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야 함.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생과 힘겨루기하면 교사의 학급 운영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그래서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힘겨루하기보다 교사의 감정을 조절하고 수업이 끝난 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임.

무기력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응

- 평소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때, “선생님의 수업에 네가 함께 해줘서 정말 기쁘다.”라고 학생의 작은 변화에 격려함. 한 번의 격려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격려로 조금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장기적으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음.
- 학습이 어려워서 무기력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과제를 작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학습량과 수준을 맞추어 제공해야 함. 지속해서 작은 성취를 경험하다 보면 과제 수행 능력이 향상됨.
- 강요하는 것보다 따뜻한 말을 건네며 무기력한 학생을 기다려 줘야 함. 과제에 집중하는 순간에 격려를 해주면 과제 해결의 부담감을 떨치고 조금씩 시도할 수 있음. 조금해하지 않고 학생의 속도에 맞춰 가정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¹²⁾ I-메시지는 ‘나’를 주어로 하여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화 방식임.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전달하는 ‘너 전달법’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의사소통인 경우가 많음. 그래서 ‘나’를 주어로 I-message를 사용하면 타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음.

유의사항

지속적인 대응 방법

-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누가기록을 해야 함. 누가기록에는 학생이 한 구체적인 행동만 객관적으로 적음.

Tip

꼭 알아주세요!

- 누가기록에는 교사 개인의 의견을 적지 말고 사실만을 기록해주세요!

- 수업 중 태도에 관한 학급 규칙을 다시 정해서 올바른 수업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학부모 상담(필요시 Wee 클래스 연계)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함.
- 지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단위 학교 차원에서 지원 방법을 마련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궁금해요?

Q1.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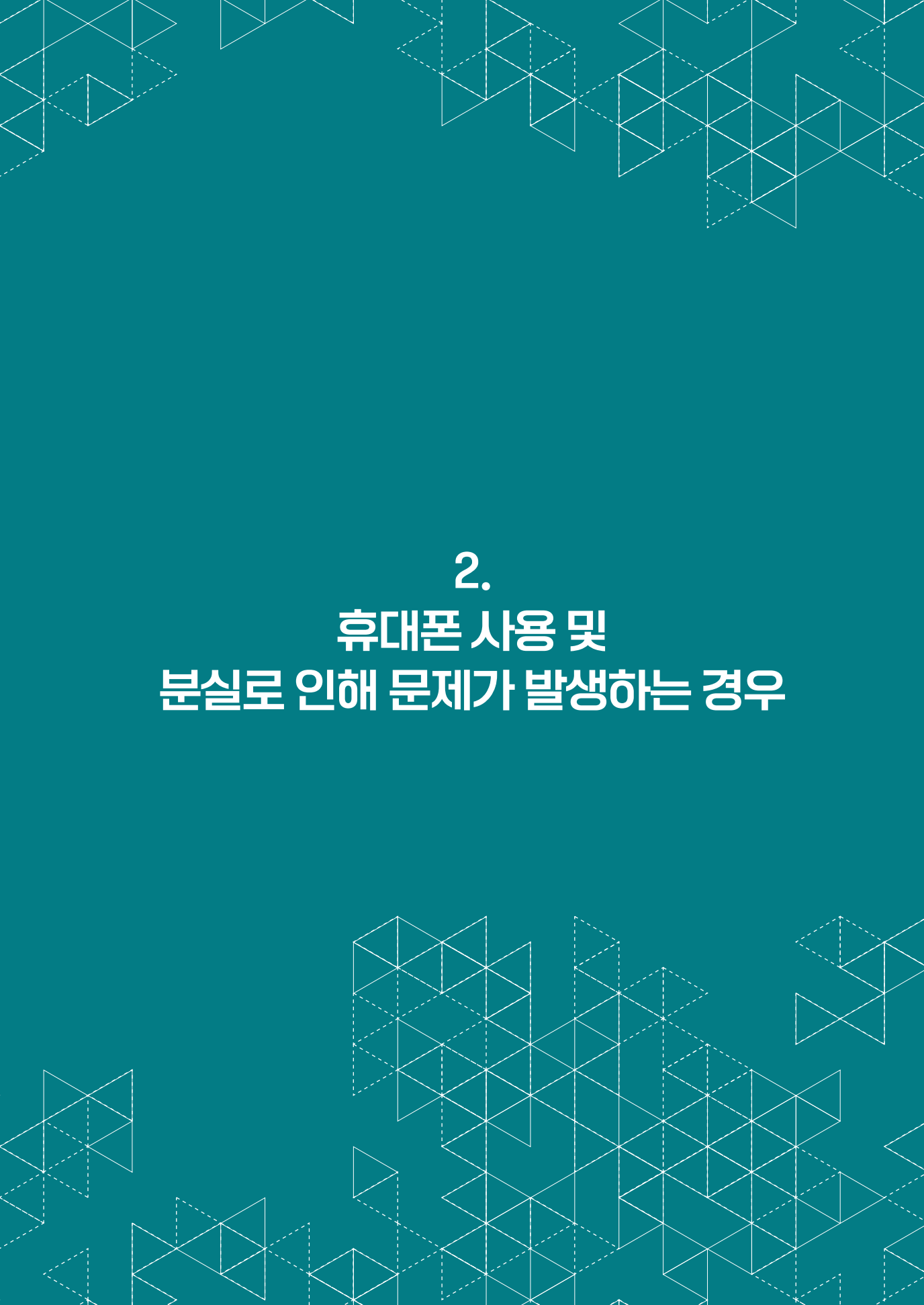
A1.

신고가 접수되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학생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특정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뉘지며, 학생이 교사의 높은 언성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두려움과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정서학대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 교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MBC 스페셜 다큐 548회 〈10대의 감정보고서〉
(<http://playvod.imbc.com/Template/VodView?bid=1000833100662100000>)
-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www.kyci.or.kr)
- 대한청소년소아정신의학회 (www.kacap.or.kr)



2. 휴대폰 사용 및 분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휴대폰 사용 및 분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례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수업시간에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꺼 놓기로 약속했지만, 휴대폰 벨 소리가 들려서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교사가 임의로 휴대폰을 수거할 수 있을까요?

수업시간에 학생이 휴대폰을 몰래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학교에서 정한 시간만큼 교사가 제출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만으로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없음. 그러나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거나,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에 대한 욕설,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음.

수업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대응 방법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안내

- 학교생활규정을 확인하여 휴대폰 사용 규정을 안내하고 숙지하도록 교육함.
- 학생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수거하고 하루종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배치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OO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함. 이에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함.¹³⁾

¹³⁾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11.04.)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999&menuid=001004002001> (검색일:2020.12.17.)

- 학교 차원에서 학생생활규정에 휴대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학급 차원에서 약속을 만드는 것이 좋음.

Tip

휴대폰 사용 규정 예시 ¹⁴⁾

1. 휴대폰의 일괄적인 수거는 하지 않음
2.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하여 사물함에 두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이 책임지고 관리함
3. 다음 사항을 위반 시에는 휴대폰을 압수하여 보관하고, 아래와 같이 교육함
 - 1) 휴대폰은 수업 시간 및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됨
 - 휴대폰 사용이란 휴대폰을 만지거나, 휴대폰 벨 울림 및 진동 등으로 수업 시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포함함
 - 2) 수업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간 이외에도 필요 시 휴대폰 사용을 규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
 - 3) 시험 때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 일체를 소지할 수 없음
 - 4) 수거한 휴대폰은 하교 시에 반납 받았다가 다음 날은 자신이 보관함
4. 휴대폰 규정을 잘 지킨(예: 위반 건수 1회까지) 학생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예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휴대폰 사용규정을 잘 지켜 휴대폰을 자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보임. 높은 도덕성은 높은 성취로 이어진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장래가 기대됨”

- 일과 중 휴대폰을 걷는 학교에서 학생이 휴대폰을 추가로 가지고 와서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일방적으로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학생과의 상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야 함.

¹⁴⁾ 돌봄치유교실, <https://cafe.naver.com/ket21>

휴대폰 분실 관련 대응 방법

- 교실에서 휴대폰이 분실되었을 때, 학생이 휴대폰을 훔쳐 간 것은 절도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함.
- 친구를 괴롭히기 위해 휴대폰을 가져가거나, 타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와이파이 셔틀 등)은 학교폭력 행위로 보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

학교 관리 중 휴대폰이 분실된 경우

- 2014년 1월부터 학교 규칙 등에 따라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태블릿 pc 등 포함)을 일괄 수거한 후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된 경우,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약관이 변경됨.¹⁵⁾

Tip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특별약관] (2022.3.1. 시행)

1. 휴대품(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의 보관·관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한 경우
2. 분실된 휴대품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서 신고) 등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조사 후 분실한 휴대품을 찾은 경우
4. 휴대품 본체를 제외한 기타부속물(SIM카드, 외장메모리, 장식용 덮개, 액정보호필름 등)
5. 휴대품 기능상 손실이 아닌 단순 스크래치나 긁힘이 있는 경우
6. 구매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불성실하게 보관·관리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 학교규칙(규정 포함)에 의하지 않고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보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학교규칙(규정 포함)에 휴대품 수거 근거가 없는 경우
나. 교사 개인 소지, 교탁, 개인서랍 등에 방치 또는 보관한 경우
2. 휴대품의 보관 장소에 시건 장치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보관 장소에 시건장치가 없는 경우
나. 시건장치의 열쇠 등을 교사 외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 휴대폰 분실 시 즉시 보고 후 사고신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 제출해야 함.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접수 받은 후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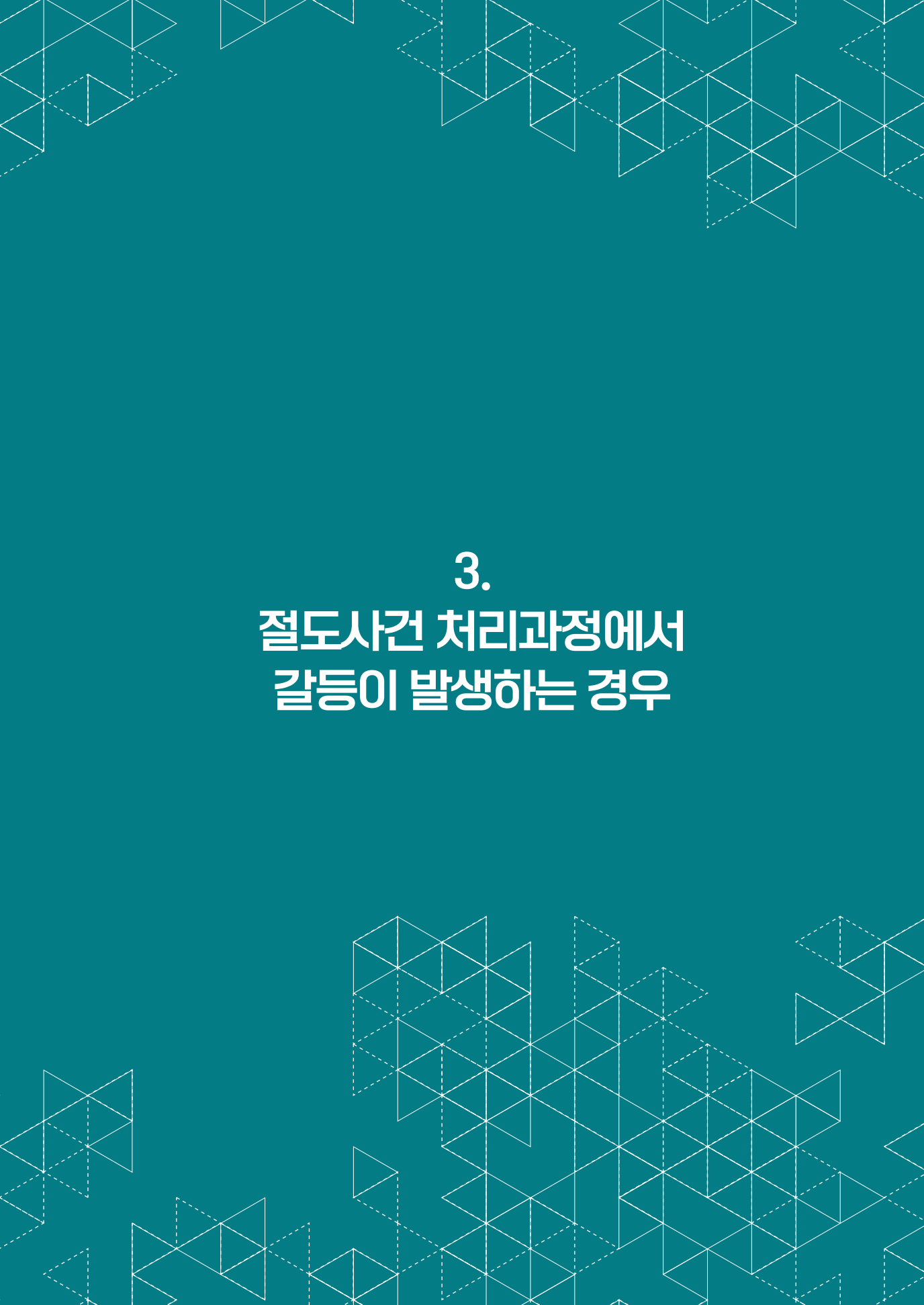
학교 관리 중 휴대폰이 분실된 경우 보상 절차(2022.3.1 변경 약관 적용)

- 학교: 사고 신고서 작성(도난 분실 사실 확인서 또는 증빙 자료 첨부) 후 학교안전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며, 분실 경위 조사(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 후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접수 → 심사 → 지급여부 결정 → 적정액 지급

¹⁵⁾ 교육부 보도자료(2013.12.05.) 학교 관리 중 휴대폰 분실시 보상, 교원 교육활동 지원

참고 자료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https://youtu.be/NGaXTpY4dwM>)
-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비스 사이버안심존(<https://ss.moiba.or.kr/index.do>)
- 스마트쉼센터(<https://www.iapc.or.kr/>)



3. 절도사건 처리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3. 절도사건 처리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례 분실사고

A학생은 쉬는 시간 후에 돌아오니 내일 볼 시험의 노트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험불안감과 함께 아주 예민해진 A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교사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찾아달라고 합니다. 교사는 난감해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학부모는 곧 종례 이후에 학생들이 하교를 하는데 가지고 간 학생을 지금 찾지 못하면 어쩔거냐고 하면서 학생들 소지품 검사 등을 해서 꼭 찾게 해달라고 합니다. 찾지 못하면 담임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고, 시험을 망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담임교사는 당황하여 종례 시간에 학생들 가방 검사를 하였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가방을 검사하는 교사에게 항의를 하였고, 하교 이후 반의 여러 학생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 교내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은 대부분 학생 사안이 많음. 절도 사안 처리 시 학생의 인권과 관련법령 등을 제대로 확인해야 함. 본 사례는 절도 관련 사안에 대해 학생 인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소지품(가방) 검사를 하였음. 교사의 미숙한 대응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협박 등이 일어나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Tip

[주의 : 소지품 조사 관련]

위의 사례는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은 사례이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무리하게 학생의 소지품(가방)을 조사하였음.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이를 벗어난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인정받기 힘들. 안전의 문제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함. 헌법에서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지품 검사는 ‘수색’에 해당하며, 소지품을 검사하려면 ‘상당한 이유’와 ‘합리적 관련성’을 충족해야 함.

-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절도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

초기 대응의 중요성

- 피해(신고)학생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함. 착각을 한 경우나 자신의 부주의로 분실을 한 것이 아닌지를 명확히 한 후 피해 물품(현금 포함)의 정확한 사실과 관련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하여 단순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함.
- 물증이 있는 경우 확보하고, 없을 경우 관련 방법을 구안하여 피해 학생과 함께 논의함
- 신고학생 및 용의학생의 동선을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학생의 주변에 대해 참고할 만한 것을 신속하게 조사함.
- 학교 규정에 맞추어 게시판에 피해 물품의 분실 등을 공지하여 주변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학생이 스스로 돌려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줌.
- 각종 증거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절도 용의학생과 상담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함.
- 위의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사실에 입각하여 해당 사안의 정보를 알리고, 용의학생의 부모에게는 학생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한 후 심리적으로 불안한 자녀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안내함.

처리 과정

- 대부분의 절도 사건은 범행을 저지른 학생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학교에서는 사법기관처럼 조사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
- 학생 조사 과정에서는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편파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정황적으로 학생의 절도가 확인될 경우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생이 우려하는 상황(따돌림, 낙인, 징계 등)에 대한 이해와 선제적인 조치(상담, 보호, 책임 있는 자세 등) 할 필요가 있음.

분실과 절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 분실을 절도로 착오한 경우, 학생들에게 분실임을 공지하고 학교는 정의로운 공간이라는 것과 본인 소지품 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주의를 줌.
- ‘절도’는 당사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표현으로 학교를 비교육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게 함. 절도 혐의가 있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의 빌미가 되기에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

학생의 심신(心神) 및 교사(敎唆)의 문제

- 절도 사건의 경우 범행을 저지른 학생들의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은 죄에 대한 경감은 할 수 있지만, 형법상 죄가 없는 것은 아님. 우발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힘 있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 절도를 시키거나 절도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시 학생의 주변 상황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유의사항

기본 원칙

- 처벌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절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단정 짓지 말 것
- 사안이 공개적으로 다루어지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 것
-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것
- 비공개적인 조사를 토대로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
- CCTV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말 것
- 절도 용의학생의 가정상황 등을 확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경우라면 문제해결 방안을 사후논의(경제적 지원, 학비지원 등)에 반영할 것

예방의 중요성

- 정기적인 예방교육을 토대로 절도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도록 함.
- 범죄 욕구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의 규칙과 파생될 문제점을 잘 인식시켜야 함.
- 물건을 잘 관리하는 학생들에 대한 포상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지도를 통해 물건 관리에 대한 교육적인 의미를 생활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자신의 소지품에 이름표를 작성하여 부착하도록 함.
- 가능한 학교에서는 귀중품 보관실과 보관지침을 마련하고 귀중품은 학교에 보관하도록 안내한다면 분실과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음.

신중한 조사

- 필요한 경우 상담, 보건 및 학생을 잘 아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폭넓게 하도록 함.
- 과거에 있었던 절도 사안을 이유로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함.
- 친구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된 행위가 있을 가능성에 주의함.
- 사이가 안 좋은 친구의 가방 등에 자신의 물건을 일부러 넣어두고 분실신고를 한 후 그 친구의 가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또는 일부러 소지품(물건, 돈 등)을 흘리고 특정학생이 가져가는 상황을 촬영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 절도 사건은 추후 다른 문제 상황(학교폭력, 자해, 자살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예방 교육과 사안 처리 시 교사의 신중한 자세가 특히 요구됨.

학부모 면담 방법

- 절도 사안이 발생하고 사안이 확정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와 상담을 하면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같은 공간에서 상담을 하지 않도록 함.
- 절도 용의학생의 부모는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절도라는 표현에 대해 아주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공감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참고 2]
경찰에 신고당하거나
조사 받는 경우

[참고 2] 경찰에 신고당하거나 조사 받는 경우

사례 교사를 경찰에 신고

A교사는 00중학교의 학생부장교사입니다. 매사에 학생 지도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다 보니 흡연 및 음란물을 보는 학생, 지각을 일삼는 학생, 복장 불량인 학생 등을 위해 엄격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B학생은 A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가지고 학생부장인 A교사 차량의 타이어를 못으로 구멍을 냈습니다. CCTV를 확인하여 자신의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낸 학생이 B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교사는 B학생을 불러서 훈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B학생은 혼나는 게 두려워서 A교사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체벌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신고 대응 방법

1. 경찰이 학교에 오게 되는 과정(예시)



※ 제시된 과정은 예시이며, 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학생이 신고를 한 경우 일단 관할 지구대에서 접수를 함.
- 지구대에서는 신고를 받은 교사를 바로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협조를 구함.
- 학교장 협조 ¹⁶⁾ 이후 교사에게 통상적으로 임의동행 여부를 구함.
 - 승낙한 경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음.
 -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없이 체포 불가. 폭행 등을 한 경우 지구대에서는 ‘발생보고’하고 추후 경찰서(형사과)에서 해당 교사 출석요구를 하고 조사를 진행함.

¹⁶⁾ 교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음. 「교원지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2. 경찰 신고에 의한 대응 방안

- 허위 신고 등 교사를 기망하는 신고의 경우
 - 신고가 들어온 이상 경찰은 조사를 해야 하므로 불편하더라도 경찰에 협조를 하는 모습이 타당함.
- 변호사 등 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의 주장이 사실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 센터 및 교원단체의 변호사 등에게 도움 받는 것을 추천함. 이후 경찰 조사 시 변호사 입회,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할 시 변호사를 통한 협상을 고려할 수 있음.

3. 경찰 신고 주요 사안

- 학생 폭행
 - 물리적 폭행, 언어적 폭행, 정서학대 등
- 성범죄
 - 성추행 등

〈함께 생각해 보기〉

이제는 체벌이 폭력으로서 형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금지되고, 체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학생지도 과정에서 폭행이나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체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체벌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벌’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체벌과 징계는 구분되는 개념인데, 징계가 법적 효과를 갖는 처분으로서 학교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체벌은 법적 효과가 없는 사실행위이며 교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2011년 3월 18일에 개정되었고, 개정 전 규정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달리 설명하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가 있다는 해석이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 학교 규칙에 따라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¹⁷⁾

참고로 다음은 체벌이 폭행죄 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¹⁸⁾

〈교사의 체벌이 폭행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1. 학생 교정의 목적이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인 경우
2.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낮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인 경우
3.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의 경우

4. 학생의 심신(心神) 및 과거 전력의 문제

■ 요보호 학생인 경우

- 경찰에 신고하는 학생 중에는 과민한 성격, 분노조절장애 등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음.
- 학업에 대한 흥미 부족 등 자신의 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한 이상행동으로 교사를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음.

■ 과거에도 신고한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자신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담임 등 교사를 신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음.

¹⁷⁾ 김성기·황준성·이덕난(2017), 교권 바르게 찾아가기. 가람문화사.

¹⁸⁾ 이윤희 변호사 블로그 <https://m.blog.naver.com/lawme1007/221195656613>

학생과의 관계형성 및 교육 방안

■ 기본 원칙

- 사안 발생 시 감정을 컨트롤하며 교실 안에서 벗어나 가급적 교무실 등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의 상황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부정적 제재보다 긍정적 보상을 통해 학생을 지도함.

■ 교사의 전문성 함양

- 교사의 수업이 충실하고 열정적이라고 하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도 줄어들고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경우가 있음.
-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육적인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학생 존중 및 안전거리 유지

- 학생을 존중하는 언행을 사용하며, 친구 같은 교사가 아니라 친근한 교사로서 학생과 교사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표현이 많으면 이를 문제 삼아 교사의 지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교사의 복무 태도

- 학생, 학부모, 동료 교직원 등에게 성실한 교사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의 생활태도를 지적하는 경우, 학생들이 교사의 복무태도나 평소 생활 습관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음.

■ 상담 및 코칭

- 정기적인 상담으로 학생이 공감적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코칭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체크하고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힘과 비전을 갖도록 조력함.
- 학생 상담 및 이상 행동 등에 대한 기록을 면밀히 남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됨. 문제가 되는 학생의 행동이 계속 관찰된다면 평소에 상담 기록 등을 남겨두어 향후 문제가 되었을 경우, 교사의 학생에 대한 노력 등과 학생의 이상 행동에 대한 상황에 대해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회복적 생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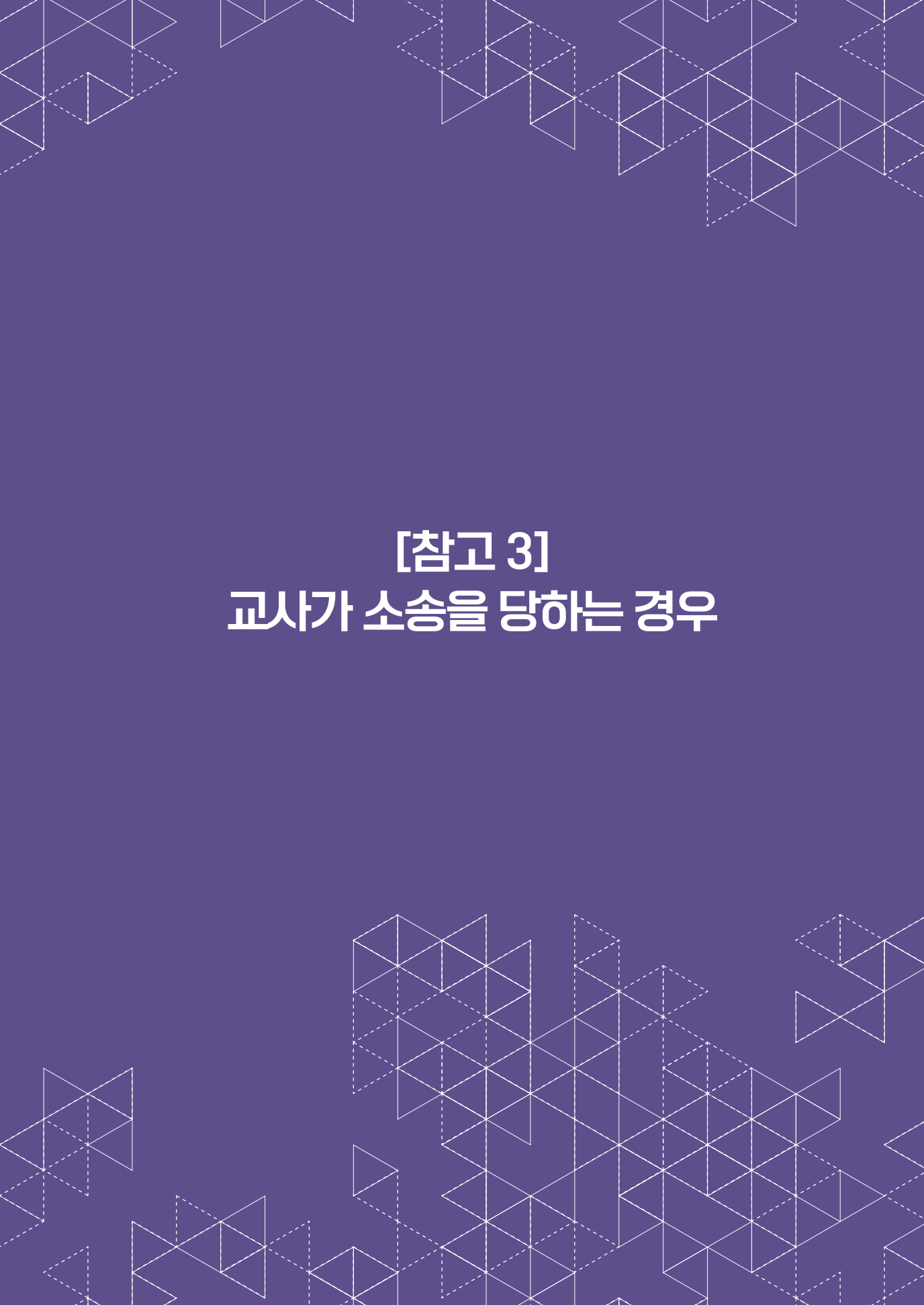
- 학생과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지도받는 학생들이 규정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음. 교사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도에 불응하고 교사를 불신할 수 있음. 생활 규정과 학생 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력이 필요함.
- 학생이 교사에 대한 보복 심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도록 회복적 상담을 통해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음.

■ 학생에 대한 대처

- 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학생이 진정으로 감화하여 변화한다면 그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 이는 전화위복이 되어 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느낄 수 있음.

참고 자료

- 경찰조사 10계명(<https://www.youtube.com/watch?v=qRlzNewkCDY>)
- 경찰조사를 받을 때 준비사항(<https://www.youtube.com/watch?v=o7DU5l0f9fs>)



[참고 3]

교사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

[참고 3] 교사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 ¹⁹⁾

사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함

저희 반에 평소 수업 방해 행동이나 비행이 심하여 성심껏 지도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까지 사안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동학대 조사관이 학교에 방문하여 제가 그 학생을 학대했다는 조사가 진행되었고, 몇 주 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서로 오라고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학생을 남들이 없는 곳에서 때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 내용 중에는 미리 들은 내용 이외에도, 수업 중 여러 학생들 앞에서 모욕하고 망신을 주었다는 내용부터, 제가 그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저한테 안기길래 거리를 두려고 주의를 준 것조차, 제가 그 학생이 싫다는데 꺼안았고, 학생이 싫다고 하자 제가 혼낸 것으로 사실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님이 계속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셔서 5시간 동안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지쳐서 서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교사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

■ 학교(장)에 대한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교사에게 안전사고 등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이행하고, 행정 절차나 판단에 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개선할 수 있음.

¹⁹⁾ 이 절은 교사119, 이럴때 이렇게(송영호·왕건환, 2019)와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박종훈·정혜민, 2019)를 참고하였음.

■ 교사 개인에 대한 소송

-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측 변호사 선임료의 일정 부분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
- 형사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로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해도, 교원의 품위 손상 등 일부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징계는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도,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도 교사는 크게 위축되기 쉬움.
- 교사의 잘못이 명백한 부분이 있다면 관리자나 부장교사 등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학생을 잘 지도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태도와 행동이 중요함.
- 합의하는 과정에서의 실수가 더 큰 소송의 빌미가 되거나 추가 요구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합의 진행 중에 감정적 양금을 덜어내고 주위의 중재를 통해 합당한 수준의 합의금이나 진심어린 사과, 학생 지도 다짐, 담임교체 요구 수락, 휴직, 전보 등으로 합의할 수도 있음.

■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섭섭함이나 감정 해소

- 평소 학부모와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함. 학생의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소통할 땐 항상 학생에 대한 칭찬을 덧붙이면 좋음.
- 학생을 징계한다면 취지를 미리 납득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음.
- 부장교사나 관리자, 해당 학생의 이전 담임 등의 중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학부모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수개월 간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화해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재판 진행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 치료 등을 병행하길 권장함.

■ 학생 지도로 인한 소송 예방하기

- 학생 몸에는 접촉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며, 비행 사실이 있을 때는 학교 규칙과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생을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선도해야만 함.
- 지도 절차 관련 법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교원단체에 사례를 축적하여 법규 개정을 요구해야 함.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갈등 상황이나 소속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대응

- 도움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불특정 다수가 있는 SNS 공간 등에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상대를 자극할 수 있으니 보안에 유의해야 함.
- 초기부터 학교 관리자나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단체나 시·도교육청 교권 부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도움 받는 것을 권장함. 관련 기관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학교장은 피해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5일 이내) 부여, 공무상 병가(학교장 허가로 6일 이내, 추가 인정 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 재해 심의 필요) 승인할 수 있음. 피해교원은 일반 병가, 연가를 사용하거나 상담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학교장은 교내에서 법규행정의 최고 전문가이며 책임자임. 만약 교장이 교사가 당한 침해를 은폐·축소한다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될 수 있음.

■ 녹음 등 증거 수집과 정리

- 녹음, 녹화는 음성권, 초상권 침해가 되어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음. 잘못 배포되면 명예훼손까지 인정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거나 불법정보수집 그 자체를 처벌하기도 함.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고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니, 변호사의 검토를 미리 받아야 함.
-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자리를 이탈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등 통신비밀보호법²⁰⁾ 상 도청, 감청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녹음 과정에 위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증거로 제시하기 전에 변호사 등과 상의를 거쳐 제시해야 함.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금지되므로, 본인 목소리가 녹음되거나 공개된 대화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본인이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한다면 폭넓게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한 후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제시해야 함.
- 확보 과정에서 상대방을 크게 자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녹화나 녹음 중인 휴대폰을 상대방이 빼앗아 망가뜨릴 수도 있음. 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확실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²⁰⁾ 통신비밀보호법 :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초기 대처의 중요성

-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일단 긴급출동 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정식 사건 접수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보호자에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
- 학부모 등이 교육청, 인권위, 국민청원 등을 이용한다면,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가 나왔을 때 적절히 소명하고 시정하면 됨.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나 진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서에 확인 서명하기 이전에 내용 수정을 요청하거나,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 변호사 알아보기

- 고소장은 대개 상대방을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요구이며, 민사소송은 금전적인 손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요구임.
- 시·도교육청과 지원청, 교원단체에는 변호사가 상주하기도 하고 변호사비 지원 제도도 확대되고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음. 자문변호사 인력풀도 있어서 연락처를 요청하면 비교적 관리되고 검증된 변호사를 연결해 줌.
- 인터넷에는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선임, 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검색해보면 도움이 됨. 변호사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전문분야 등 자기소개가 있으니 참고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도 함. 이때 변호사가 학교 관련 사건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면 좋음.
- 상담 시 본인에게 불리할 만한 상황도 숨기지 말아야 함.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며, 불리한 사실도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음.
- 심한 체벌이나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몇 가지 조언을 해주며 굳이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수도 있음.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것만을 한정하여 비교적 소액으로 선임계약을 할 수도 있음.

■ 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 언론이나 외부에서 소통을 요청할 때에는 담당 부장교사나 교감 등으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함. 여러 명이 응대할 경우 정보가 왜곡되어 퍼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재판 과정은 최소 몇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의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는 급하게 응대할 필요 없이 정기적으로 변호사에게 문의하며 신중히 대응해야 함.
-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관리자 등에 의해 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면, 우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한 후, 필요하다면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

- 교원용 자료집 - 개발진

기획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위원

전구슬 교육부 / 교육연구사

집필진

서미향 신백중학교 / 교장

신건철 구로초등학교 / 교사

임지백 인천원당초등학교 / 교사

이안정 진산중학교 / 교사

왕건환 경기고등학교 / 교사

조기성 인천하늘고등학교 / 교사

검토진

강문식 제주시교육지원청 / 장학관

이광열 영월교육지원청 / 장학사

이나연 법무법인 공간 / 변호사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권지원실장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정책위원장

이윤경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회장

김현수 금구초등학교 / 교사

장경주 양화중학교 / 교사

하정희 연일중학교 / 교사

박재광 목호고등학교 / 교사

검토 및 지원

박승희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원

채민정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원

연구자료 CRM-2022-02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인 원장 류방란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전화: 043-530-9114 Fax: 043-530-9819

<http://www.kedi.re.kr>

인쇄처 예송미디어